

워크숍 2007 -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III)

금융기관 구조변화에 따른 신용정보 법제의 동향과 과제

2007. 7. 20

워크숍 일정

- ◆ 주 제 : 금융기관 구조변화에 따른 신용정보 법제의 동향과 과제
- ◆ 일 정 : 2007년 7월 20일(금요일), 오후 3시 ~ 6시
-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진행일정

◇ 사 회

이철송 (한양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제 1주제 : 금융기관 구조변화의 현황과 전망

발 표 자 : 고동원 (건국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김창범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안성포 (단국대학교 교수)

제 2주제 : 미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발 표 자 : 맹수석 (충남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김석훈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심 영 (중앙대학교 교수)

제 3주제 : 신용정보 관련 입법현황과 문제점

발 표 자 : 박재훈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관)

토 론 자 : 김경신 (국회 재정법제실 법제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목 차

◆ 개 회 사	9
◆ 제 1주제 : 금융기관 구조변화의 현황과 전망 - 고동원 (건국대학교 교수)	11
I. 머리말	13
II. 금융기관 구조 변화의 현황	14
1. 총 설	14
2. 은행산업	15
3. 증권산업	21
4. 보험산업	24
5. 자산운용산업	25
6. 비은행예금수취기관	26
7. 평 가	28
III. 향후 전망 및 과제	29
1. 향후 전망	29
2. 과 제	36
IV. 맺음말	43
참고문헌	45
◆ 토 론 문	
- 김창범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47
- 안성포 (단국대학교 교수)	57

◆ 제 2주제 : 미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 맹수석 (충남대학교 교수)	67
I. 머리말	69
II. 미국의 금융관련 개인정보규정	71
1. 법규정의 체계	71
2. GLB법상의 금융정보보호	72
3. FCR법에 의한 보호	79
4. GLB법과 FCR법의 적용 관계	85
5. 기타 규제 현황	86
III. 우리나라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90
1.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의 개관	90
2. 신용정보보호법의 내용	91
IV. 우리법과 미국법제의 비교 및 시사점	95
1. 법규정의 비교	95
2.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98
참고문헌	102
◆ 토론 문	
- 김석훈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105
- 심 영 (중앙대학교 교수)	113
◆ 제 3주제 : 신용정보 관련 입법현황과 문제점	
- 박재훈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관)	119
I. 신용정보법 개정배경 및 기본방향	121

가. 개정배경	121
나. 개정방향	122
II. 개정안의 주요내용	123
가.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촉진	123
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강화	126
다.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127
III. 평가 및 향후과제	129
가. 평 가	129
나. 향후과제	130

◆ 토론 문

- 김경신 (국회 재정법제실 법제관)	133
-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141

개 회 사

이 철 송
(한양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이 철송입니다. 법제연구원의 워크샵을 위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IT시대라고 합니다만, 특히 개인에 관한 정보는 모든 소비자 상대의 산업에서 바로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유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고, 금융거래에서는 개인정보의 제공이 거래조건을 이루다보니 금융기관이 바로 개인정보의 원천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정보탐색의 근원이 되어 있는 형편이고,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화두에서는 으레 금융기관이 소지하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누출을 어떻게 방지하고 활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법제연구원의 주관으로 최근에 현저해지는 금융산업의 변화를 계기로 해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동원교수께서 근래 금융기관 구조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활발히 하고 계신데, 나머지 본론적인 두 개 주제의 기초적인 소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최근의 금융기관의 구조변화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금융기관이 향후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에 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신용법제에 관한 것이니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이 점을 의식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고 교수의 주제에는 김창범 법제관과 안성포 박사가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만, 이 주제에 관해서는 토론을 간단히 해 주시고 주제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세 주제 모두에 관한 종합토론으로 범위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국이 아무래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선진적이라 하겠으나, 금융정보에 관해서는 또한 공익적 고려를 강하게 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좋은 관찰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맹수석 박사께 미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법제에 관해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맹박사의 발표후에 김석훈 조사역과 심영박사께서 토론을 해 주시는데, 아까 제1주제의 토론에 관해 말씀드린바와 같은 요령으로 제2주에 관해서는 토론시간을 줄여 주시고 나중에 종합토론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용정보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박재훈 사무관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의 두 주제는 결국 우리나라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다루어지는 것이므로 박재훈 사무관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신 법제관과 한정미박사가 토론을 해 주시겠는데, 두 분도 역시 이 주제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앞의 두 개 주제에 관해서도 토론범위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주제

금융기관 구조변화의 현황과 전망

발 표 자 : 고동원 (건국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김창범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안성포 (단국대학교 교수)

발 표 문

금융기관 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망 및 과제

고 동 원
(건국대학교 교수)

I. 머리말

2007년 7월 3일 국회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다)을 통과시켰다. 2009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전부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관련 회사의 합병·인수 등 대형화 추세가 거세지면서 자본시장 업계의 대지각 변동(즉, 소위 말하는 금융 빅뱅(Big Bang))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3대축으로 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1997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큰 구조 변화를 겪었다.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특징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은행간의 합병 등으로 대형 은행이 출현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겸업화도 그 대세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펀드(fund, 간접투자증권 상품) 판매 업무 및 보험대리점 업무(즉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업무) 등의 허용으로 비이자 부문의 수익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력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경쟁력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산업의 경우에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등이 개별 금융기관에 의하여 영위되고 많은 중소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출현으로 과당 경쟁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 많은 한계가 노출되었다. 따라서 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출현을 통한 자본시장 관련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대형 보험회사의 높은 시장점유율에 의하여 중소 보험회사와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의 내용을 고찰하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그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우선 II.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의 특징에 대하여 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III.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II. 금융기관 구조 변화의 현황

1. 총 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큰 변화의 특징은 대형화, 겸업화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대형화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이는 은행간의 합병에 따른 대형화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금융그룹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편 겸업화는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업무 확대를 통한 겸업화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겸업화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금융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각 금융산업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은행산업

(1) 서 설

2005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은 시중은행 8개, 지방은행 6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39개이며, 이들 일반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717조원이다.¹⁾ 은행의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은행간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대형화를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육성 정책의 핵심은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이었다. 이러한 대형화와 겸업화의 핵심에는 은행이 있었던 것이다. 대형화의 측면을 살펴보면, 여러 건의 은행 합병을 통하여 규모가 큰 은행이 탄생하였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금융그룹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겸업화의 측면은 직접적인 은행 업무의 겸업 확대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겸업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대형화

1) 은행간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

1997년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하여 추진된 금융구조조정은 부실은행의 정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98년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인 부실은행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산부채이전 방식에 따른 은행 폐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부실 정도가 심한 동화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이 퇴출되었으며, 지방은행 중에는 부실 정도가 심한 경기은행 및 충청은행이 1998년 6월

1)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5. 12, 167면.

각각 한미은행 및 하나은행에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퇴출되었으며, 1999년 5월에는 충북은행이 1999년 9월에는 강원은행이 조흥은행으로 각각 합병되어 퇴출되었다.²⁾ 그리고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공적자금(즉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을 투입하여 정부 소유화하였다. 제일은행, 서울은행, 조흥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예금보험공사를 포함)가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 중 제일은행은 1999년 12월에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99%를 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캐피탈회사(Newbridge Capital Ltd.)에 매각하여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은행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이 대주주인 외국계 은행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국외환은행인 경우에는 2003년 9월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 펀드가 한국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었다. 한미은행의 경우에는 2000년 9월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칼라일(Carlyle)과 제이피모간(J.P. Morgan)이 공동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4년 11월에는 미국의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여 현재는 한국씨티은행으로 영업중이다. 이로써 세 번째 외국계 은행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은행들간의 합병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9년 1월에는 후발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이 보람은행을 흡수합병했으며, 1999년 4월에는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하여 한빛은행이 탄생되었으며, 더 나아가 2001년 12월에는 한빛은행이 평화은행을 흡수합병하였고, 2002년 5월에는 우리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8년 12월 장기신용은행을 합병한 국민은행이 2001년 10월에는 주택은행까지도 합병하여 자산 규모가 제일 큰 은행이 되었다. 2002년 11월에는 하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었던 서울은행을 인수하여 합병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2006년 4월에 신한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었던 조흥은행을 인수

2) 위의 책, 168면 각주 3)

하여 합병하였다.³⁾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금융그룹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겸업화 및 대형화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라고 하며,⁵⁾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하나금융지주회사가 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지 않은 금융지주회사로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가 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처음으로 2001년 3월에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처음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부실은행이었던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이외에 증권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어 설립되었다. 2007년 6월말 현재 9개의 자회사(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주), 우리CS자산운용(주), 우리금융정보시스템(주), 우리에프엔아이(주), 우리프라이빗에쿼티(주), 우리금융제3차SPC(유)) 및 13개의 손자회사(우리은행의 자회사로서 우리신용정보(주) 및 우리은행의 해외현지법인들, 우리투자증권(주)의 자회사로서 우리선물(주) 및 해외 현지법인들 등)를 두고 있다.⁶⁾

두 번째 금융지주회사는 2001년 8월에 설립된 신한금융지주회사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출범한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07년 6월말 현재 12개의 자회사(신한은행, LG카드(주), 신한카드(주), 굿모닝

3) 위의 책, 168면 각주 2).

4)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5)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6) www.woorifg.com 참조.

신한증권(주), 신한생명(주), 신한캐피탈(주), 제주은행, 신한신용정보(주), 신한프라이빗에쿼티(주), 신한비엔피파리바투신운용(주), 에스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 신한맥쿼리금융자문(주))를 두고 있으며, 13개의 손자회사(신한데이터(주), 에스에치자산운용(주), 신한은행의 해외 현지법인들 및 굿모닝신한증권의 해외 현지법인들 등)를 두고 있다.⁷⁾

세 번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2003년 5월에 설립된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이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지 않은 금융지주회사이다. 처음 설립된 때는 동원금융지주회사이었는데, 2005년 3월에 한국투자증권(주)를 인수하면서 2005년 5월에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6년말 현재 한국투자증권(주),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주), 한국투자파트너스(주),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주)⁹⁾ 등 4개의 자회사와 한국투자신탁운용(주), 한국밸류자산운용(주), 런던현지법인(Korea Investment & Securities Europe Limited, 뉴욕현지법인(Korea Investment & Securities America Inc.), 홍콩현지법인(Korea Investment & Securities Asia Limited) 등 5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네 번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2005년 12월에 설립된 하나금융지주회사이다.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된 하나금융지주회사는 2007년 6월말 현재 자회사로 하나은행, 하나대투증권(주), HFG IB증권,¹⁰⁾ 하나생명보험(주),¹¹⁾ 하나캐피탈(주),¹²⁾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및 하나아이앤에스(주)¹³⁾ 등 7개의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손자회사로서 대한투자

7) www.shinhangroup.com 참조.

8) 1986년 11월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동원창업투자(주)에서 상호가 변경된 창업투자회사이다.

9) 2006년 3월에 설립된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을 수행하는 회사이다(www.koreaholdings.com 참조).

10) 종전 상호는 하나증권이었으며, 하나금융지주회사가 처음 설립될 때에는 손자회사이었으나, 2006년 11월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07년 2월 상호를 HFG IB증권으로 변경하였다(www.hanaib.co.kr 참조).

11) 2007년 5월 손자회사에서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다(www.hanalifeinsurance.com 참조).

12) 2007년 4월 손자회사에서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다(www.hanacapital.co.kr 참조).

13) 금융전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www.hanains.com 참조).

신탁운용(주),¹⁴⁾ 청도국제은행¹⁵⁾ 등 2개 손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3) 겸업화

1) 직접 은행 업무의 확대를 통한 겸업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최대 핵심 사항은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었고, 이를 위한 은행업무의 겸업 확대가 초점이 되었다. 은행의 겸영업무로서 종전의 신탁업 및 신용카드업 이외에도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대행 업무(즉 펀드 판매 업무) 및 자산운용업 일부 겸영이 허용되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및 제4호 참조). 즉 1998년 9월부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의 수익증권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2003년 10월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한 법임)의 시행과 더불어 2004년 3월부터는 종전의 수익증권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투자회사의 간접투자증권(즉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판매 대행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은행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호). 또한 간접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업도 겸영업무로서 허용되었다(은행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호). 이외에 일부 보험업무도 부수업무로서 겸영이 허용되었다. 즉, 2003년 8월부터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업무, 즉 보험대리점 업무(보험상품의 판매 대행)가 은행에 허용되어,¹⁶⁾ 판매가 허용되는 보험상품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은행의 부수업무도 확대되어 은행의 비이자수익 부문도 크게 증대되었다. 우선 2003년 7월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고시(告示)인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

14) 하나대투증권(주)의 자회사이다.

15) 하나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인 자회사이다.

16)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는 부수업무범위지침이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규정하고 있으나(동 부수업무범위지침 II.19호), 보험업법상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점 및 업무의 성격상 겸영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 지침(이하 “부수업무지침”)을 개정하여, 1) 기업 인수합병(M&A)의 중개 뿐만 아니라 주선 및 대리 업무(동 지침 II.11호), 2) 금지금의 매매, 대여, 금 적립계좌 등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업무(소위 골드뱅크(gold banking) 업무)(동 지침 II.12호), 3)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업무(동 지침 II.17호), 4)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업무(동 지침 II.18호), 5) 다른 법률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 대행 업무(동 지침 II.20호), 6) 전자화폐 등 선불, 직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업무(동 지침 II.21호), 7)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업무(동 지침 II.22호), 9)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동 지침 II.23호), 10)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업무(동 지침 II.24호) 등을 추가로 허용하여 부수업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서 2006년 3월에는 은행의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중 상품파생상품 거래(commodity derivative) 업무도 법인 고객과의 위험 회피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동 지침 II.16호), 은행의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업무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은행의 비이자수의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쳐¹⁷⁾ 전반적으로 은행의 수익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겸업화

겸업화라고 하는 것은 직접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 형태를 통한 겸업화를 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겸업화의 정책 방향

17)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비이자수의 부문의 비중은 총이익 중 13.1%(2005년 기준)를 차지하는 반면에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42.9%(2004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 은행들과 비교하여 아직은 비이자수의 부문의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오용석,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 및 감독 방향,” 『금융법연구』 제3권 제1호(한국금융법학회, 2006. 9), 194면 각주 17)).

을 선택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우선 우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은행업뿐만 아니라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용정보업 등의 금융업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형태로 두면서 겸업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도 가장 다양한 금융업종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면서 겸업을 하고 있는데, 은행업 이외에 증권업, 생명보험업, 자산운용업, 신용정보업, 금융자문업, 금융전산업,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형태로 두면서 겸업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증권업, 자산운용업, 상호저축은행업, 창업투자업 등의 금융업종을 겸업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은행업뿐만 아니라 증권업, 자산운용업, 생명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융전산업 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형태로 영위하고 있다.

3. 증권산업

(1)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증권산업도 큰 변화를 겪었다. 우선 1998년 정부의 증권산업 개편 방안에 따라 부실 정도가 심한 투자신탁회사의 운용 조직과 판매 조직을 분리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7개의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 구조 조정의 결과 6개 증권회사가 퇴출되었으며, 이후에도 부실 정도의 심화 등의 사유로 2개 증권회사가 퇴출되었으며, 6개 증권회사가 다른 증권회사들에게 합병되었다.¹⁸⁾ 한편, 온라인증권회사

18) 한국은행, 앞의 책, 254면.

및 중개전문증권회사¹⁹⁾의 설립 등 1998년에서 2003년 중에 총 19개 증권회사가 설립되었다.²⁰⁾

이에 따라, 2005년 6월말 현재 40개의 증권회사와 15개의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총자산 규모는 61조원이다.²¹⁾ 그 추이를 살펴보면, 증권회사의 수는 1995년에는 33개, 2000년에는 32개 이었다가 2005년 6월에는 40개로 늘어났으며,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1995년에는 14개, 2000년에는 22개이었다가 2005년 6월에는 15개로 감소되었다.²²⁾ 이렇게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지점을 현지법인화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05년 6월말 현재 32개 증권회사가 종합증권회사(인수업, 위탁매매업 및 매매업을 모두 다 영위하는 회사)이고, 8개의 증권회사가 중개전문증권회사이다.²³⁾

(2) 업무의 확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업무 확대가 이루어졌다. 증권회사는 고유업무인 증권업(위탁매매 및 중개업, 매매업 및 인수업) 이외에 겸영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데(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²⁴⁾ 최근 겸영업무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다.

19) “중개전문증권회사”는 유가증권 인수업무는 영위하지 않고, 유가증권 위탁매매 및 중개 업무(brokerage)만 영위하거나 또는 위탁매매 및 중개 업무와 유가증권 매매업무(dealing)를 동시에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유가증권 인수 업무까지 다 영위하는 회사를 종합증권회사라고 한다.

20) 한국은행, 앞의 책, 254면.

21) 위의 책, 253면.

22) 위의 책, 253면.

23) 위의 책, 255면.

24)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법적 분석에 대하여는 고동원, “증권회사 업무 범위 규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제6권 제2호(한국증권법학회, 2005. 12), 31-73면 참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동안 은행에게만 허용되어 왔던 신탁업을 2005년 3월부터 허용하였는데(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이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으면 영위할 수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수탁회사 업무(동법 제23조) 및 자산보관회사 업무(동법 제24조)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업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게 되었다. 이외에도 최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장외(OTC) 파생금융상품거래 업무를 영업용순자본비율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2002년 7월부터 허용하였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그리고 2003년 8월부터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또한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2003년 2월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및 주식워런트증권(Equity Covered Warrant: ECW)의 발행을 허용하면서(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6호 및 제7호) 파생금융상품거래 업무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2005년 3월에 파생결합증권(Securitized Derivatives) 및 상법상의 익명조합 등(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의5호 및 제8호)을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파생금융상품 거래 업무의 확대 등 증권회사의 증권업 범위가 확대되었다.

증권회사의 부수업무도 확대되었는데, 2005년 3월부터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의 임대·매매의 중개 또는 자문 업무(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5항 제1호 카목), 유가증권 가치분석 정보의 판매 업무(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5항 제1호 타목), 업무 제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알선 업무(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5항 제1호 파목)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4. 보험산업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이 금지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별도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서 설립이 활발하여 1988년에서 1994년까지 15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신설되었다.²⁵⁾ 그러다가 199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부실화됨에 따라 퇴출, 합병 등 구조조정으로 1998년에 4개의 회사가 퇴출되었다. 즉 1998년 11월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생명보험, 태양생명보험, BYC생명보험 및 고려생명보험(합작회사) 등 4개 회사가 각각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및 제일생명보험으로 흡수 합병되었다.²⁶⁾ 2000년대에 들어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중소형 보험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수는 감소하였다. 즉 2000년에는 동아생명, 조선생명 및 태평양생명이 각각 금호생명, 현대생명 및 동양생명에 각각 흡수 합병되었으며, 국민생명 및 한덕생명은 SK 생명에 흡수 합병되었다. 2001년에는 삼신생명 및 현대생명이 대한생명으로, 2003년에는 대신생명이 녹십자생명에, 2004년에는 한일생명이 KB생명에 각각 흡수합병되었다.²⁷⁾ 한편, 합작회사 및 외국 현지법인 생명보험회사는 각각 1989년 7월 및 1990년 12월에 처음 설립이 되었는데,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단독 진출이 증가하면서 합작생명보험회사의 수는 줄어들고 현지법인 생명보험회사의 수가 증가되어, 2005년 6월말 현재 합작회사는 2개이고 현지법인 생명보험회사는 7개이다.²⁸⁾ 그리고 1999년 12월말 기준으로 29개의 생명보험회사

25) 한국은행, 앞의 책, 233면.

26) 위의 책, 233면 각주 66).

27) 위의 책, 233면 각주 67).

28) 위의 책, 233면.

가 영업중이었으나(전국회사 12개, 지방회사 6개, 합작회사 6개, 현지법인 3개, 외국회사 국내지점 2개), 2005년 6월말 기준으로는 총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중이며(전국회사 11개, 지방회사 1개, 합작회사 2개, 현지법인 7개, 외국회사 국내지점 1개), 총자산 규모는 217조 원이다.²⁹⁾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980년말까지 추가 손해보험회사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9년 11월 한국보증보험이 설립되고, 1992년 7월에는 미국계의 비질런트(Vigilant) 손해보험회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였다.³⁰⁾ 1998년 11월에는 부실이 심각한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이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하였다.³¹⁾ 2000년대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업 규제가 철폐되면서(모든 손해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음) 국내 자동차보험회사 2개가 신설되었으며(다음자동차보험(2003년 12월 설립), 교원나라자동차보험(2003년 11월)), 재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8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가 국내 지점을 개설하였다.³²⁾ 그리고, 2000년에는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13개, 외국손해보험회사 국내 지점이 4개 등 총 17개이었으나, 2005년 6월말 현재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13개를 포함하여 28개 손해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며 총자산 규모는 45조원이다.³³⁾

5. 자산운용산업

자산운용회사는 2003년 10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과 증권투자회사법이 통합되면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

29) 위의 책, 232면.

30) 위의 책, 239면.

31) 위의 책, 239면.

32) 위의 책, 239면.

33) 위의 책, 238면.

용회사를 통합 개편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업은 1974년 9월 최초의 전업 투자신탁회사인 한국투자신탁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고, 1997년 2월에는 대한투자신탁, 1982년 7월에는 국민투자신탁, 1989년 11월에는 5개의 지방 투자신탁회사(한일투자신탁(인천), 중앙투자신탁(대전), 한남투자신탁(광주), 동양투자신탁(대구) 및 제일투자신탁(부산))가 신설되면서 활성화되었으며, 1996년과 1997년에는 투자자문회사에서의 전환 등으로 23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설립되어 경쟁이 심해졌다.³⁴⁾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실 투자신탁회사의 퇴출 등의 구조조정으로 자산운용업계는 큰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2개의 투자신탁회사(신세기투자신탁 및 한남투자신탁)가 1998년에 퇴출되었으며, 신설 투자신탁운용회사 중 5개 투자신탁운용회사(고려, 동서, 으뜸, 동방페레그린 및 보람 투자신탁운용)가 1998년에 인가 취소되어 정리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서 2004년 중에는 증권시장의 활황 등의 영향을 받아 11개 투자신탁회사가 설립되기도 하였다.³⁵⁾

2000년말 기준으로는 투자신탁회사 및 투자신탁운용회사를 포함하여 24개의 회사가 영업 중이었으며, 2005년 6월말 기준으로는 46개의 자산운용회사³⁶⁾가 영업중이며, 총자산 규모는 200조원(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합계)에 달하고 있다.³⁷⁾

6. 비은행예금수취기관

은행이 아니면서 예금을 수취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수산

34) 위의 책, 261면.

35) 위의 책, 261면.

36) 2004년 1월 간접투자자산운용법령의 시행으로 종전의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회사로 일원화되었다.

37) 위의 책, 260-261면.

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을 들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1975년 12월 제정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결제, 보험, 가계대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1976년 4월 최초의 종합금융회사인 한국종합금융(주)가 설립되었으며, 1979년까지 5개 종합금융회사가 추가로 설립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6개의 종합금융회사가 있었다.³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융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는데, 1996년에는 15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여 종합금융회사는 1997년말에는 30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 이후 1998년에 16개 부실 종합금융회사가 퇴출되었고, 1999년부터 2003년 기간 중 추가로 13개의 종합금융회사가 퇴출 또는 합병되어, 2005년 6월말 현재 2개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³⁹⁾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에 따른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3법⁴⁰⁾의 하나로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되었으며,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상호저축은행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설립 초기 1972년말 350개에 달했던 상호저축은행의 수는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통폐합, 신규 설립 억제 정책 등에 의하여 1980년말에는 192개로 줄어들었으나, 1980년대 초에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서 1982년 7월에서 1983년 11월까지 총 58개의 상호저축은행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지방 중소기업의 부도 급증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상호저축은행이 퇴출 또는 합병됨에 따라 1997년말 기준 231개였던 상호저축은행의 수가 2000년말 기준 147개로 줄어들었고, 2005년 6월말 기준으로는

38) 위의 책, 214면.

39) 위의 책, 214면.

40)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을 말한다.

112개로 감소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업구역 제한 및 지점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최저자본금이 증액⁴¹⁾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⁴²⁾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전인 1971년말에는 582개이었던 신용협동조합의 수는 1997년말 1,666개로 증가하였다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채권 증가로 인하여 상당한 부실 신용협동조합이 퇴출 또는 합병되어 2005년 6월말 현재 1,059개로 감소하였다.⁴³⁾ 새마을금고도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11,719개이었으나 그 후 부실 금고의 정비 등으로 1983년말에는 5,360개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금고 수는 계속 줄어 2005년 6월말 현재 1,624개 새마을금고가 영업중이다.⁴⁴⁾ 한편, 상호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수는 2005년 6월말 기준 각각 1,317개, 92개 및 132개이다.⁴⁵⁾

7. 평 가

이상에서 본 것처럼,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의 큰 특징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형화, 그룹화 및 겸업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도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형화 및 그룹화를 통한 겸업화 정책과 더불어 펀드 상품(간접투자증권)의 판매 업무 및 보험상품의 판매 업무(보험대리점 업무) 등의 허용 등으로 은

41) 상호저축은행의 최저자본금은 본점이 특별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120억원, 광역시인 경우 80억원, 도(道)인 경우에는 40억원이다(상호저축은행법 제5조 제1항).

42) 위의 책, 220-221면.

43) 위의 책, 225면.

44) 위의 책, 227면. 다만 회원 수는 꾸준히 늘어 2005년 6월말 현재 1,469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위의 책, 227면).

45) 위의 책, 228면.

행의 비이자수익 부문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수익력이 많이 향상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증권산업이나 보험산업은 아직 은행산업만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자본시장 및 관련 증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 분야도 크게 성장할 것이 기대되는데, 앞으로 보험산업 및 기타 비은행금융권의 육성 문제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Ⅲ. 향후 전망 및 과제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 변화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향후 경쟁력 있고 선진화된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향후 전망

앞으로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방향을 예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의 발전 과정을 비추어 보고 현재의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형화, 겸업화 및 세계화(globalization)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대형화 추세의 지속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의 특징 중의 하나는 대형화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과 견주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은행산업의 경우 대형화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관련 증권산업의 대형화 추세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영향을 받아 보험권도 대형화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1)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목적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위주로 금융산업이 육성되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증권, 선물, 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육성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의하여 자본시장 및 관련 금융산업은 한층 발전된(upgrade)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동법의 특징은 크게 1)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상호간 직접 겸영 허용,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 등 업무 범위의 확대, 2)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3)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 체계(functional regulation) 도입, 4) 투자권유자 제도 도입, 이해상충 방지 체제(firewall) 마련 및 발행공시의 적용 범위 확대 등 투자자 보호 제도의 강화 등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내 금융업인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을 내부 겸업(in-house)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자본시장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

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겸업 업무 영위는 강력한 이해상충 방지 장치(firewall)를 요구하고 있어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겸업 이외의 방법인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 방식도 선택할 수 있으나, 규모의 경제 등의 효과를 감안할 때 직접 겸업 방식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경우 기존의 증권회사,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간의 합병이나 자본의 확대 등을 통한 대형화가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은행의 대형화(금융그룹화) 추세의 지속

은행권도 마찬가지로 대형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복합금융그룹화 현상이 더 보편화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최근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고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지 않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증권회사 인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⁴⁶⁾은 앞으로 은행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 추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물론 은행이 직접 증권자회사를 두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그룹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로 동일한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간에 개인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조치를 들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비추어 볼 때 겸업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 추세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본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금융회사간 결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추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한 금융업무의 범위 확대 및 전문화가 용이하고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

46) 중앙일보 기사, 2007. 7. 5, E1면.

다는 점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형태가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3) 보험업의 대형화 추세

증권권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가능성은 보험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인한 증권업계의 금융투자회사화 및 지급결제제도의 참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험업계도 업무 확대 등 육성책을 요구할 것을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정부는 “보험산업 내외의 칸막이와 업무구분을 완화하여 보험산업을 종합적인 자산 및 리스크 관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대형화와 M&A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보험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⁴⁷⁾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보험산업도 업무의 확대와 대형화 추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금융그룹화로 대형화를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 겸업화의 확대

금융산업의 대형화의 추세에 따라 금융업의 겸업화 추세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 즉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본시장 관련업의 직접 겸영 허용 조치 및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 추세 등을 비추어볼 때 대형화에 따른 겸업화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금융투자회사의 겸업화 추세

앞서 본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업, 즉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의 직접적인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

47) 재정경제부 등, “2007년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경제점검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료, 2007. 7. 10, 29면.

서 이러한 금융투자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업의 겸업화 추세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어느 하나 또는 일부에 특화된(niche market)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나, 대세는 직접적인 내부 겸업화의 추세일 것이다.

2) 은행의 겸업화 추세

은행의 겸업화 추세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으로 은행에 큰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서 은행권도 업무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데, 이에 대응하는 것은 겸업의 확대이며, 그 중에서도 증권업의 겸업 확대 방안이라고 본다. 현재 은행은 증권관련업을 부수업무로서 제한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데,⁴⁸⁾ 우선 국공채에 한해서만 인수업을 영위할 수 있고, 국공채 및 회사채에 한해서만 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외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업무, 유가증권 차입·대여 및 투자 업무, 기업인수 합병(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등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⁴⁹⁾ 그런데, 향후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은행도 증권업무의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기능별 규제는 받아야 할 것이다.

3) 보험업의 겸업화 추세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로 겸업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상대적으로 열세에 위치해 있는 보험산업도 업무 확장을 위해 겸업업무 및 부수업무의 확대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

48) 증권업무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겸영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9) 부수업무지침 II.3, 4, 13호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참조.

고, 증권업계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동등하게 지급결제 업무까지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요구는 정부의 방침과 일치하는 것으로⁵⁰⁾ 앞으로 보험산업의 겸업화 추세는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업계가 예금, 적금 상품 등 예금업무 뿐만 아니라⁵¹⁾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유동화자산관리업 및 신용카드업까지도 겸영업무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⁵²⁾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보험업계의 겸업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3) 금융의 국제화 및 세계화(globalization)

향후 금융산업의 또 하나 방향은 금융의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라는 점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금융중심지 국가 추진 전략도 결국은 금융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더욱 크게 진전시키자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도 활성화시켜 우리나라를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면서 한편으로 국내 금융기관을 선진국 금융기관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국제적인 선진 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임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된 것이며, 그 목적 중의 하나가 세계 우수 투자은행(IB)과 견줄 수 있는 국내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의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0) 재정경제부 등, 앞의 자료, 29면.

51) www.inews24.com 에서 “은행-증권-보험간 싸움은 이제부터” 기사(2007. 7. 5) 인용

52) www.economy.hankooki.com에서 “보험지주사 설립 허용해야” 기사(2007. 7. 10) 인용 (동 기사는 보험개발원의 2007. 7. 10자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4) 금융중심지 국가 추진에 따른 자산운용업의 발전

또 다른 한 축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중심지 국가 추진 전략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중에서도 자산운용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정부의 금융중심지 국가 목표가 자산운용업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금융중심지 국가 추진 전략에 따르면, 2010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회사의 유치 목표 등 자산운용업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국가로 만들어 2015년에는 세계 3대 금융중심지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⁵³⁾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정부는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 6월에는 자산운용회사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단계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인 펀드의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⁵⁴⁾ 또한 2005년 11월에는 10년 초과 만기 등 장기 국채의 발행을 확대하였으며, 개인·외국인 등의 채권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정부의 금융중심지 국가 추진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 중에서 자산운용업이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

53) 2005년 6월 금융중심지 추진 회의에서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은 1단계로 2007년까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금융중심지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10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회사 유치 등 특화금융중심지(Niche Financial Hub)를 추진하고, 2015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중심지 국가를 추진하는 전략을 확정하였다(재정경제부, “금융허브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보도자료 붙임자료, 2006. 6. 14, 2면). 당초 2003년 12월 발표한 금융중심지 추진 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동북아지역의 특화금융중심지(Niche Financial Hub)로 발전시키고, 2020년경에는 아시아 3대 금융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재정경제부, “제32회 국정과제회의 개최(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관련) 주요내용,” 보도자료, 2003. 12. 11, 1면), 2005년 6월에는 원래 목표보다 5년이 앞당겨진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54) 위의 자료, 3면.

55) 위의 자료, 3면.

2. 과 제

이하에서는 앞으로 금융중심지 국가를 추진하고 금융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과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크게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 단계적인 겸업은행제도의 도입,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금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 금융기관의 진입 규제 완화, 금융중심지 국가 추진을 위한 과제 등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활성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겸업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인 겸업 이외에도 자회사를 통하거나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 확대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자회사 방식을 통한 겸업화가 나은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가 나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회사간 결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추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한 금융업무의 범위 확대 및 전문화가 용이하고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더 낫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손자회사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예를 들어, 자회사인 은행인 경우 손자회사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은행과 동일한 업종, 국내 회사의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카드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즉 은행은 증권회사를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다. 또한 증권회사인 경우에도 손자회사로 해외 증권현지법인,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및 선물회사만 거느릴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금융지

주회사 산하에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⁵⁶⁾ 둘째, 금융지주회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46조). 물론 그 취지가 방만한 차입 자금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최근 부채비율(자본총액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 한도에서 200% 한도로 상향된 점⁵⁷⁾ 등을 감안할 때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예를 들어, 자기자본의 2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는 금융지주회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회사(손자회사 포함)가 아닌 회사인 경우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물론 그 취지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자회사의 경영관리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그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금융지주회사가 간접투자(portfolio) 투자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한도를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단계적인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의 도입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이 예상된다. 또한 지급결제업무의 허용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가 확대되면서 은행 고유의 수신 업무 기반이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금융산업의 중추 기관인 은행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업무를 확대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단계적인 업무 확

56) 반면에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있지 않은 은행의 경우에는 자회사로 들 수 있는 해외 금융업종에 큰 제한이 없다(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참조).

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2007. 4. 13. 개정되었으며, 6개월 후인 2007. 10.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

대를 통하여 은행이 증권 및 보험 업무를 직접 경영할 수 있는 겸업 은행제도⁵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점진적으로 은행의 증권업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은행이 경영할 수 있는 증권업의 범위는 국공채 인수 업무와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의 확대 방안을 생각해보면, 우선 주식에 비하여 위험성이 낮고 수수료 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회사채의 인수 업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금력이 있는 은행이 회사채 인수 업무에 참여한다면 은행의 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수 업무의 확대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제적인 투자은행(IB)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은행 경영의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공채 및 회사채의 위탁매매 및 중개 업무(brokerage)를 허용해주는 것도 채권시장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더 나아가서 유가증권 매매 업무의 범위도 주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험업무의 경우도 현재의 보험대리점 업무에서 보험업법이 허용하고 있는 보험중개사 업무(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 및 제89조 제2항

58) 겸업은행제도라 함은 “은행이 전통적인 예금 및 대출 업무뿐만 아니라 증권·보험 업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Saunders and Walter(1994)는 겸업은행업무(universal banking)를 “예금 및 대출, 증권매매, 외환, 주식 및 사채의 인수와 중개, 투자운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겸업은행업무는 은행이 일반 비금융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거나 지배하여 산업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Anthony Saunders/Ingo Walter, *Universal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84. 겸업은행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이해 상충(conflicts of interest), 금융과점(financial oligopoly), 자본의 비효율적인 배분(in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경제력 집중(economic concentration power) 등의 측면에서 논의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동원,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규제법의 발전 방향,”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1997. 12), 46~49면 참조. 그리고, 겸업은행제도의 도입 방안 등 겸업은행제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고동원, “겸업은행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연구』 제3호(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1999. 12), 9-27면 참조.

제2호)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⁵⁹⁾ 물론 이 경우에도 우선적으로는 금융업의 성격이 강한 생명보험업부터 점차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의 확대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겸업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은행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선진국 은행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은행이 탄생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또한 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3)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최근 금융기관의 최대 관심사는 해외 진출이다. 특히 그동안의 금융구조조정에 힘입어 경쟁력이 향상된 금융기관들은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특히 신흥시장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다소 부진한 편이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은행이 외국에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신설 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은행법 제13조), 문제는 ‘협의’라고 하는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승인’을 말하는 것인지 단지 의견을 구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애매한 점이 있다. 실제로 감독당국이 운영하기에는 승인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⁶⁰⁾ 그리고 이러한 협의 기준은 은행업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감독당국의 내부

59) 이에 대해서도 겸업은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보험업의 경우에는 은행의 자회사를 통하여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직접 겸업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60) 감독당국에서는 실제로 승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적인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어 투명성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의’ 제도를 ‘사전 신고’ 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해당 은행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을 감독당국이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금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 원인 중의 하나가 투명하지 못한 기업지배구조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0년 1월부터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를 운영하고, 감사위원회 제도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렇게 새로 도입한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첫째,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한 견제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의 운영, 둘째, 감사의 역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셋째, 내부통제기준의 도입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제도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의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보니 실제 운영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실제 업무 수행면에서 독립성 확보가 되지 않아 소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업무집행기관의 장(예를 들어, 은행장 등)과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지 않아 경영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문제 및 전문성이 잘 갖추어지고 있지 않은 사외이사의 선임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도 이사회의 산하 위원회로 두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상법 제415조의2) 이사회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경영진 및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예를 들어, 업무집행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분리, 전문가의 사외이사 선임, 은행의 경우 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사외이사 결격 요건 규정화 등)이 요구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예를 들어, 상근감사위원의 의무화, 회계·재정 전문가의 감사위원 선임,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관화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다.

(5) 금융기관의 진입 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은 진입규제의 완화를 통한 경쟁 제고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은행 및 증권회사의 진입 규제는 아주 강하다. 이의 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도 이를 인식해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⁶¹⁾

은행권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것처럼,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부실은행의 퇴출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은행산업의 과점화가 심한 상태이다. 과점은 필히 경쟁력의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온다. 한 단계 제도약하기 위해

61) news.hankooki.com에서 “증권사 신규 설립 허용키로” 기사(2007. 6. 20) 인용.

서는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인가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6) 금융중심지 국가 추진을 위한 과제

2003년 12월 정부는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 금융중심지 전략을 논의하였다. 즉 정부는 기존 제조업·수출 위주 산업 구조로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결정하였다.⁶²⁾ 이는 금융부문의 선진화 달성이 실물부문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실물부문의 성장이 금융부문의 추가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⁶³⁾ 특히 정부는 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자산운용업을 선도 산업으로 지정하고 여타 관련 금융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며, 금융규제와 금융감독을 선진화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국내·외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⁶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는 금융중심지 국가 추진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법률”

62) 재정경제부, “제32회 국정과제회의 개최(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관련) 주요내용,” 보도자료, 2003. 12. 11, 1면.

63) 위의 자료, 1면.

64) 위의 자료, 1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동북아 금융중심지 국가 달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는데, 1) 자산운용업을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며, 2) 자본시장,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을 선진화 하며, 3) 동북아 구조조정 및 개발 금융과 선박금융 등 지역 특화 금융수요를 개발하며, 4) 국외 금융기관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5) 여유 외환보유유액 및 공공기금을 투자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며, 6) 금융규제 감독 체계를 혁신하며, 7) 금융 관련 경영·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다(위 보도자료, 3-7면).

(안)(이하 “금융중심지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⁶⁵⁾

이러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금융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금융 선진국이나 금융중심지 국가와 비교했을 때 금융규제가 강한 편에 속한다. 금융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금융감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금융규제 완화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감독기법의 선진화이다. 이를 위한 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금융감독인력의 전문화, 감독행정의 투명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융중심지 국가를 추진하기 위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금융법률전문가 등을 비롯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맺음말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소위 말하는 금융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벌써 보험업계도 겸업업무 확대 등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보험업의 겸업 확대 및 대형화 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은행권도 마찬가지로 증권업의 직접 겸영 허

65)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법안 제5조 제1항), 둘째,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을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법안 제6조 제1항), 셋째, 정부는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혁신을 촉진해야 하며(법안 제7조 제1항), 넷째, 정부는 금융전문인력 양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하며(법안 제10조 제1항), 다섯째, 정부는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금융 업무 협력 등 국제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여섯째, 정부는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법안 제12조).

용 요구 등 업무 확대를 위한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금융권간의 권역이 허물어지고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다만 과도한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금융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금융감독의 전문화 및 선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그러나 금융의 겸업화, 대형화, 세계화 추세는 거슬릴 수 없는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upgrade)시켜야 한다는 대명제는 흔들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중심지 국가를 추진하는 정부의 전략에 비추어 볼 때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해야하는 것 또한 대명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은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선진화된 금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해보았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층 발전되고 도약된 모습이 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고동원,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규제법의 발전 방향,”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1997. 12)

_____, “겸업은행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연구』 제3호(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1999. 12)

_____, “증권회사 업무 범위 규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를 중심으로 -, ” 『증권법연구』 제6권 제2호(한국증권법학회, 2005. 12)

오용석,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 및 감독 방향,” 『금융법연구』 제3권 제1호(한국금융법학회, 2006. 9)

재정경제부, “제32회 국정과제회의 개최(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관련) 주요내용,” 보도자료, 2003. 12. 11

_____, “금융허브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보도자료 붙임자료, 2006. 6. 14

재정경제부 등, “2007년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경제점검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료, 2007. 7. 10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5. 12

Anthony Saunders & Ingo Walter, *Universal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제 1주제 금융기관 구조변화의 현황과 전망

www.inews24.com

www.economy.hankooki.com

www.hanains.com

www.hanacapital.co.kr

www.hanalifeinsurance.com

www.hanaib.co.kr

www.koreaholdings.com

www.shinhangroup.com

www.woorifg.com

토 론 문

금융기관 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망 및 과제 토론자료

김 창 범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를 추가하여 보충설명을 드림으로써 토론에 갈음하고자 함.

I. 겸업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이 예상되고 지급결제업무 허용으로 금융투자회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은행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함.
- 다만, 위험회피적 성향이 있는 은행이 risk-taking을 필요로 하는 금융투자업무를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II.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비판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금융중심지 국가 추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

- 는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법률로 만들 실익이 있는가에 의문이 들 정도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 그 내용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견을 조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혁신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임(발제문 p. 20 주 65 참조).
 -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중심지를 조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추진정책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사항들이 동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Ⅲ. 금융업 규제완화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

-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동의함.
- 문제는 현행 금융관련법령 중 어떠한 규제가 금융주체의 금융업 영위에 장애가 되는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봄.
- 금융규제가 완화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금융주체(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주체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상품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들 수 있음.
- 금융업 종사자가 금융업 관련 영업활동을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법제도를 만들 때 행위기준과 그에 따른 어떠한 제재처분을 받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전환을 하였음.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IV.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심사사례

1. 재정경제부안

- 통합대상 6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사유를 그대로 답습하여 재정경제부안 제371조제2항·제373조제1항 등 총 14개 조항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금융투자업자 등이나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해임요구 등)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었음.

<원안의 포괄적 행정조치 근거 조항>

대 상		조치의 사유	조치의 종류
금융 투자 업자	업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제371조제2항)	-6월 이내 영업전부 또는 일부 정지, 위법행위 시정명령·중지명령, 기관경고·주의 (제371조제2항)
	임·직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제373조제1항·제2항)	-임원 : 해임요구, 6월 이내 직무정지, 주의 -직원 : 면직, 6월이내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펀드 및 펀드 관계 기관	집합투자 기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제198조제1항)	-등록 취소(제198조제1항)
	투자회사 (감독이사)	-금융투자업자 규정 준용 (제202조)	-금융투자업자 규정 준용 (제202조)

제 1주제 금융기관 구조변화의 현황과 전망

대 상		조치의 사유	조치의 종류
펀드 및 펀드 관계 기관	일반사무 관리회사	-금융투자업자 규정 준용 (제263조제2항)	-금융투자업자 규정 준용
	집합투자 기구평가 회사	-금융투자업자 규정 준용 (제264조제4항)	-금융투자업자 규정 준용
	채권평가 회사	-금융투자업자 규정 준용 (제265조제3항)	-금융투자업자 규정 준용
거래소		-금융투자업자 준용 (제317조제4항)	-금융투자업자 준용
금융투자업관계기 관(증권금융, 예탁 결제원, 협회, 명 의개서, 투자단체)		-금융투자업자 준용 (제376조)	-금융투자업자 준용
상장법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 (제182조)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기타(제182조)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준용 (제409조)	-금융투자업자 준용
자금중개회사		-금융투자업자 준용 (제412조제5항)	-금융투자업자 준용
단기금융업무 영위 금융기관		-금융투자업자 준용 (제413조제3항)	-금융투자업자 준용

2. 법령심사시 문제제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불이익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이라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모두 열거할 것으로 재정경제부에 요청하였음.

3. 재정경제부·금융감독당국의 반론(우려사항) 및 이에 대한 재반론

재정경제부 반론(우려사항)	법제처 재반론
<p>① 행정조치근거 미비로 인한 loophole 발생 가능성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의 복잡·방대함에 비추어 행정조치가 필요한 모든 경우를 일일이 법률에 열거하는데 한계가 있음. - 투자자보호 관련 신규 제재수요가 생긴 경우 법률 개정 없이는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자가 열거할 수 없는 규제사항을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임 - 규제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

1) “----이 법에 의한 명령”이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하위 법령을 뜻하는지, 시정명령 등 행정청의 구체적 명령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 2001. 1. 18. 99헌바112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 관련 >

‘이 법에 의한 명령’ 부분은 그 의미가 이 법 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법 제59조(주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등), 제61조(연합회 회장의 시정명령 등) 등 개개의 시정 명령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가리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명령을 법에서 정한 개개의 시정명령 내지는 의무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규정 자체로서 그 명령의 내용을 예측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으로 보는 경우라도 정해질 내용의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제정경제부 반론(우려사항)	법제처 재반론
<p>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규제공백 상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p>	<p>이 바람직함. 일부 규제공백상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조치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제정법의 목적에 부합함.</p>
<p>② 행정조치사유 및 조치내용의 광역화 경향 초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거방식에 따른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특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급적 다양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하는데, 모두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감독기관의 처분재량범위 축소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기관의 처분재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사유와 행정처분유형을 다양화해서 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임
<p>③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행정조치에 원용할 경우 행정조치의 경직화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형법정주의는 자의적 형사처분에 의한 인권유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 행정조치는 주된 규제대상이 영리를 추구하는 업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의 위법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반사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행정처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점에는 동의함. - 그러나, 취소·영업정지·해임요구 등과 같은 제재처분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 및 생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사유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p>④ 시행령·금강위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작위·부작위 의무유형을 법률에서 모두 열거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 - 하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체계상 하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된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행정처분사유 마지막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재정경제부 반론(우려사항)	법제처 재반론
위반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 조치사유로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4. 최종 심사결과

2006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²⁾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이라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모두 열거하여 입안하였는데, 그 내용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음.

행정조치 유형	행정조치사유 관련 별표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별표 1] 312개호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53조제1항제7호·제2항 관련)	[별표 2] 89개호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57조제1항 내지 제4항 관련)	[별표 3] 19개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62조제1항 내지 제4항 관련)	[별표 4] 18개호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67조제1항 내지 제4항 관련)	[별표 5] 19개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그 업무집행사	[별표 6] 27개호

2) 국회에서 2007. 7. 3 통과된 법안 중 행정제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제출안과 거의 동일함.

제1주제 금융기관 구조변화의 현황과 전망

행정조치 유형	행정조치사유 관련 별표
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8조제1항 제6호·제3항 내지 제5항 관련)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93조제1항 내지 제3항 관련)	[별표 7] 22개호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7조제1항 내지 제3항 관련)	[별표 8] 29개호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35조제1항제6호·제2항 내지 제4항 관련)	[별표 9] 26개호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4조제1항제4호·제2항 내지 제4항 관련)	[별표 10] 32개호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9조제1항제6호·제2항 내지 제4항 관련)	[별표 11] 22개호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4조제1항제6호·제2항 내지 제4항 관련)	[별표 12] 19개호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9조제1항제5호·제2항 내지 제4항 관련)	[별표 13] 18개호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411조제1항 내지 제3항 관련)	[별표 14] 30개호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 사유(제426조 제5항 관련)	[별표 15] 13개호

4. 은행법 및 보험업법의 경우

은행법 및 보험업법의 경우에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행정제재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법률개정시 구체화 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봄.

※ 은행법

제53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营业을 한 경우
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보험업법

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①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국내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행위
3.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③국내사무소는 그 명칭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 당시에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토 론 문

금융기관 구조변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요지

안 성 포
(단국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고동원교수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변화의 키워드는 대형화와 겸업화 그리고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한다.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우리나라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餘論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일원화와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과 신탁업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융기관이 대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금산분리의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한국판 골드만 삭스’라 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확충을 필요로 한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업의 여유자금을 새로운 자원으로 삼아 금융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한다. 특정 재벌로 하여금 은행을 소유하게 해 경영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자본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Ⅱ.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금산분리의 원칙

1. 금산결합금지론

우리나라는 산업의 금융지배와 관련해서 은행업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의 산업지배와 관련해서는 개별 금융업별로 금융업의 특성에 따라 동일인 투융자한도제, 자기계열 투융자한도제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격한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의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 논의는 은행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수준의 분리정책을 보험, 증권, 카드업 등 금융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외환위기가 우리 기업의 부채 위주의 과도한 확장전략에 기인한 것이고 그러한 확장전략이 가능했던 데에는 산업에 의한 제2금융권의 지배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집단들이 계열확장을 위한 자금의 조달경로로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소유하면서 계열사에 무분별하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계열을 확장한 것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산업과 금융간의 결합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집단의 존재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와 산업간의 결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에 대한 실정법상의 규제

(1)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규제

은행법은 산업의 금융지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의 산업지배도 금지하고 있다. 산업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은행법은 비

금융주력자의 경우 은행의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는 비율 이내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은행법 제16조의2). 여기서 비금융주력자란 기업집단의 자본 총계에서 비금융회사의 자본의 합이 25%를 초과하는 기업집단, 또는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또한 은행의 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37조).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가 은행에 출자한 비율 중 작은 비율 이상 여신을 공여할 수 없도록 하고(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은 자기자본의 1% 이상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35조의3)

보험업의 경우에는 산업의 보험업 소유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보험회사의 산업지배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09조).

또한 자기계열과의 거래한도와 관련해서는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에서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동일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06조).

증권업의 경우에는 산업의 증권업 소유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증권회사의 산업지배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54조의3). 다만, 증권업의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직접적인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거래만을

제한할 뿐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계열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업,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신기술금융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자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신기술금융업의 경우에는 자기계열과의 거래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의한 규제

금산법은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와 5% 이상 소유하고 당해 금융회사가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감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금산법 제24조). 한편 금감위원장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동법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취득이나 관련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6조).

(3)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인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3). 또한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없으며,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4)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계열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계열기업 전체로 당해 발행회사 주식의 15%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1조)

3. 금산분리원칙의 완화론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기업집단들이 부채에 의존한 확장적 경영 행태가 가능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대규모 기업집단과 금융기관의 경영위험과 실패에 대해 국가가 제공한 보험기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산업합리화 조치를 통해 기업집단과 금융기관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금융지원을 하곤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보험기능은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의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를 가능하게 하여 고도의 성장을 뒷받침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반면,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에 大馬不死라는 모럴 헤저드를 야기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는 정부가 제공했던 민간의 보험인수에 대한 보험기능의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커지게 된 상황이 낳은 결과였다고 할 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성장보다는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의 위험을 억제하는 데에 두어지고 있다. 기업집단의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가 금지되었으며 행정지도에 의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낮추었다.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주체로 외부주주의 역할을 강조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무엇보다도 대우그룹을 포함한 다수 기업집단의 실패를 방지함으로써 더 이상 정부가 기업집단의 실패에 보험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장에 분명히 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시장에 분명히 하였다. 자기계열과의 거래에 대한 한도제가 강화되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계열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이사회 전원의 찬성에 의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위험기피 행태로 인해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 기업집단을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도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이 기록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대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위험을 인식하지 않는 무분별한 확장이라는 외환위기 이전의 행태와는 정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위험기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제상황이 이러함에도 기업집단 및 금융회사와 관련된 정책은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의 기업행태와 금융행태를 상정하고 지나치게 경제력과 위험이 집중되어 기업의 실패가 국민경제의 실패로 확산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균형잡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서적이고 관성적인 논의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Ⅲ. 금융감독기구의 일원화

2000년 저축은행 부실문제, 2003년 카드부실문제 등 굵직한 금융현안이 터질 때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나눠져 있는 감독기구 조직의 개편 논의가 불거졌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금감위와 재정부의 금융정책국, 국제금융국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금융감독구조는 실질적으로 3원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감독의 패러다임도 규정(rules) 보다는 원칙(principles)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기도 하다. 미국의 뉴욕시장을 볼 베이스의 감독을 하고 있는 반면, 런던은 원칙 중심의 감독을 중시하고 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40여개의 기업이 런던시장으로 옮겨간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의 샤페인스-옥슬리법이 너무 엄격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런던시장으로 기업들이 옮겨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도 규제 보다는 감독 위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Ⅳ.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과 신탁업의 운명

우리나라에서 신탁업은 금융업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고 그에 대한 규제법은 신탁업법이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신탁업법

은 폐지되고, 신탁업자(신탁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금융투자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자로서만 규제를 받게 된다. 결국 자본시장통합법하에서 신탁업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신탁업자는 일반불특정금전신탁상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특정금전신탁상품은 취급할 수 있으나, 합동하여 운용할 수는 없다.

이것은 신탁상품과 집합투자상품(자산운용상품, 간접투자상품)을 엄격하게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신탁이 내재하고 있는 집단적 자산운용 기능, 즉 집단신탁으로서의 발전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능별 규제는 모든 금융기관의 기관별 규제를 포함할 수 없는 것이고, 금융투자업으로서의 신탁업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면서도 신탁업법을 폐지하고 있다. 그 결과 투자성 없는 신탁상품과 현행 신탁업법상의 핵심업무와 부수업무를 등한시 하여 신탁업이 독자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저해하고 있다.

신탁업법이 폐지된다면,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 없는 신탁상품(순수관리형신탁, 자산유동화형신탁, 원본보전형신탁 등)을 취급하는 신탁업자는 어떤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인가. 신탁업겸업은행과 신탁업겸업보험회사는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의한 규제를 받을 여지가 있으나, 신탁업겸업증권회사의 경우에 업법으로서의 규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투자성없는 신탁상품은 업법의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행 신탁법에 의한 거래의 규율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국제적으로 신탁은 재산관리형, 자산유동화형, 자산운용형, 자산유동화·운용형으로 구분되고, 현대화된 신탁법리로 재무장되어 금융업에 있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집단투자기구인 투자신

탁은 집단신탁의 범리를 반영한(또는 신탁이라는 도관을 이용한) 신탁의 한 유형일 뿐이다.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금전신탁과 투자신탁을 신탁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보지 않고, 금전신탁을 1대1 계약의 개별성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강조하여, 신탁의 집단성을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신탁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탁업의 독자적인 영역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제 2주제
미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발 표 자 : 맹수석 (충남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김석훈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심 영 (중앙대학교 교수)

발 표 문

미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맹 수 석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머리말

경제주체인 각 개인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빈번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데, 금융거래관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거래 내용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의 측면에서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집·활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상태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하나의 법률 형태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통합규제방식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별개의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개별규제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EU의 경우 전자에 해당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금융거래관계 등에서 신용정보주체(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등이

있지만, 민간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Gramm-Leach-Bliley Act(이하 ‘GLB법’이라 함)와 같이 특정 환경이나 서비스에 대한 법규정 속에 포함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1999년 GLB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던 금융기관간 겸업이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허용되면서 은행(commercial bank)과 증권회사(investment bank)의 융합화로 종합금융기관(integrated financial institution)이 출현하게 되었고,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가 각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투자자문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기능적 규제(functional regulation) 원칙이 적용되도록 감독규제를 개편하였다. 그런데 GLB법의 제정에 의해 금융현대화가 촉진되기도 하였으나,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침해라는 법적 문제가 나타나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측면에서 2003년 공정·정확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이하 “FACT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한·미 FTA 금융협상분야의 내용을 보면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를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금융감독을 전제로 2년간 유예한 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및 금융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허용하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건전성조치는 우리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절차 등은 유예기간 중 미국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마련할 예정이다.¹⁾ 이로 인해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처리 허용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겸업화 촉진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형태 등 그룹화가 촉진됨에 따라 계열금융회사간 고객의 개인정보의 공유현상도 더욱

1)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금융협상 결과와 시사점□□(2007. 4. 4), 3면.

촉진될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정보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상업적 수요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접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점 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에 관한 오랜 논의와 연구결과가 축적된 미국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입법동향을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미국의 금융관련 개인정보규정

1. 법규정의 체계

미국은 금융분야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주로 GLB법²⁾과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하 ‘FCR법’이라 함)³⁾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주법과의 관계에서 GLB법에 대해서는 동법의 규정보다 엄격한 주법을 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제507조 (b)). 또 FACT법에 의해 FCR법의 일부 규정은 항구적으로 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FACT법 제711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3년 8월 GLB법보다 엄격한 금융정보프라이버시법(California 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Act; 이하

2) 이 법은 은행규제법이었던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인 이른바 Glass-Steagall Act를 폐기하고, 일괄금융서비스 등 금융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측면에서 상업은행도 증권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9년 제정된 것이다(Jason Shroff, “California: A Privacy Statute Meets the GLBA & FCR법,” 9 N.C. Banking Inst. 223, 223(2005); MARGARET BETZEL, “Privacy Law Developments in California,” A JOURNAL OF LAW AND POLICY Vol. 2:3, 831, 852(2006)).

3) 이 법은 우리의 신용정보기관에 해당하는 소비자보고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규제하기 위해 1970년에 제정된 것으로, 2003년 공정·정확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이하 “FACT법”이라 함)으로 개정되었다(이 법의 전문은 <http://www.treasury.gov/offices/domestic-finance/financial-institution/cip/pdf/fact-act.pdf> 참조).

“CFIP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는데, FCR법상의 주법에 대한 우선 규정에 저촉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연방순회법원은 CFIP법은 FCR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⁴⁾

2. GLB법상의 금융정보보호

(1) 입법목적

GLB법의 제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방식에 의한 타업종 참가의 허용 등 금융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금융관련회사간에 어느 정도의 정보공유를 인정할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되었다. 금융관련관계가 형성되면 마케팅의 고도화를 목표로 개인정보의 수집·축적과 관련회사간에 고객 정보의 교차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상당히 폭넓고도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GLB법에서는 금융관련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공유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금융프라이버시에 관해 규제하고 있다. 즉 GLB법은 은행이 증권사나 보험사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하여 은행업·증권업·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간 상호관련을 인정하고,

4) Am. Bankers Ass'n v. Lockyer 2004 U.S. Dist. E.D.Cal. D.C.No.CV-04-00778-MCE (CFIP법은 금융기관의 관련회사와의 정보공유에는 opt-out을, 비관련의 제3자와의 정보공유에는 opt-in을 요구하는 등 GLB법보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동법이 시행되었을 경우 같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은 새로운 대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은행협회는 동법의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를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GLB법은 주법이 GLB법보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507조 (b)). 항소심판결은 FCR법과 GLB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GLB법은 FCR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FCR법상의 주법에 대한 우선 조항은 GLB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412 F. 3d 1081; 2005 U. S. App., No. 01-16334)).

이들 업종이 서로 다른 관련회사간에 정보공유라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문제가 파생되기 쉽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의 비공개적 개인정보의 기밀성과 안전성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2) 주요내용

1) 보호되는 정보와 보호대상

GLB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소비자(consumer)의 비공개 개인정보(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이다. 비공개 개인정보란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금융정보(financial information)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금융상품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② 금융기관과 소비자간 거래 등에 수반하여 생기는 개인정보, ③ 기타 방법으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이에 해당한다(제509조 (4)). 이 경우의 소비자는 사업 목적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개인으로서, 법인은 제외된다(동조 (9)).

GLB법에 의해 보호받는 자는 고객(customer)과 소비자(consumer)이다. 고객이란 금융기관 등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개인고객을 말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자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란 개인, 가족 또는 일상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고객을 의미한다(15 U.S.C. 제6809조 (9)). 예컨대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은행의 ATM을 이용해 예금 인출을 서비스받는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출신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대출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 상업 또는 농업

을 위해서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은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소비자의 범위는 고객의 범위보다 넓다. 따라서 모든 고객은 소비자에 포함되지만, 모든 소비자가 고객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2) 규제대상과 감독기관

GLB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자는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이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제4조 (k)상의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5 U.S.C. 제6809조 (3)). 따라서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비은행(신용조합, 모기지회사, 신용카드회사, 채권회수회사, 투자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제509조 (3)(A)).

은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종을 감독하는 기관으로는 통화감독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있고, 비은행 감독기구로 저축금융감독국(Office of Thrift Supervision), 전국신용조합감독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이 있다. 기타 업종의 감독기관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있다. 이들 감독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비공개 개인정보의 개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GLB법에 기하여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여야 하며(15 U.S.C. 제6804조),⁵⁾ 금융기관 등에 있어서 고객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15 U.S.C. 제6801조, 15 U.S.C.

5) 이에 의해 FTC는 2000. 5. 12. 『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Information; Final Rule, 16 CFR Part 313』을 제정한 바 있다(<http://www.ftc.gov/os/2000/05/glb000512.pdf#search=Privacy%20of%20Consumer%20Financial%20Information%3B%20Final%20Rule%2C%2016%20CFR%20Part%20313>).

제6805조 (b)(2)).⁶⁾

3) 금융기관의 의무

금융기관은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성립된 시점⁷⁾부터 정기적으로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유에 관하여 설명한 지침(policy)⁸⁾과 실무를 기재한 통지(이하 ‘프라이버시통지’라 함)⁹⁾를 할 의무를 진다(제503조 (a)). 다만 고객 관계가 없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비공개 개인정보를 그룹 관련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 프라이버시통지를 하면 된다(FRB Regulation P(12 CFR Part 제216.4조 (a), (b))).¹⁰⁾

프라이버시통지의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와 거래를 개시하고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생기는 시점에 프라이버시지침을 통지(initial privacy notice)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거래

6) 이에 의해 FTC는 2002. 5. 23. 『Standards for Safeguarding Customer Information; Final Rule, 16 CFR 314』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저축금융감독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신용조합협회가 먼저 정한 세이프가드 룰과 실질적으로 같다 (“Section A. Background”, 16 CFR 314(<http://www.ftc.gov/os/2002/05/67fr36585.pdf#search=Standards%20for%20Safeguarding%20Customer%20Information%3B%20Final%20Rule%2C%2016%20CFR%20314>)).

7) 고객관계가 성립한 시점이란 예금계좌개설계약의 체결시와 여신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신용공여가 이루어진 시점, 보험가입시점, 신용카드 계좌개설시점을 말한다. 이는 FTC나 FRB 등의 금융감독당국이 협력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법 제504조 (a), 제509조 (11)). 예컨대 FRB의 Regulation P에서는 소비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예컨대 예금계좌의 개설이나 대출 등)에 들어갈 때로 정의하고 있다(12 CFR Part 216.4(c)).

8) 소비자프라이버시지침에는 거래개시후 매년 최소한 1회 고객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회사가 수집·개시하는 비공개적 개인정보의 범주, 해당 회사가 정보를 공유하는 관련회사와 비관련회사의 범주, 정보공유에 관한 통보를 받은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501조).

9) 프라이버시통지(privacy notice)에는 프라이버시지침 이외에 수집하고 있는 정보, 관련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등을 기재할 것을 요한다(동법 제503조 (a), (b)).

10) Regulation P는 고객금융정보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규정이다(<http://www.federalreserve.gov/regulations/cg/regpcg.htm>).

를 계속함으로써 고객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1회 이상 고객프라이버시지침에 대한 통지(annual privacy notice)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관계가 종료¹¹⁾되면 이 통지의무도 면하게 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지침에는 일정한 정보공유의 상황이 내포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 및 고객 이외의 소비자에게 새로운 내용의 프라이버시지침을 통지하여야 한다(revised privacy notice). 이러한 통지는 고객 등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서면에 의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자적 방법(웹사이트상의 프라이버시폴리시(privacy polish) 등)으로도 할 수 있다.

4) 정보공유의 가부

금융기관이 비공개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법은 관련회사(affiliate)¹²⁾와 관련이 없는 제3자(nonaffiliated third party)¹³⁾를 구별하여 규제하고 있다. 즉 GLB법은 그룹 관련회사 내의 정보공유에 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FCR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GLB법상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회사간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유는 항상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FCR법상으로도 비공개 개인정보가 소비자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유는 제약받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비공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의 경우 만약 금융기관과 관련회사 사이에 정보공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리업무를 금융기관 스스로 할 것인가 아

11) 고객관계의 종료라 함은 예금계좌의 경우 각 은행 소정의 기준에서 보아 수면계좌로 인정될 때, 대출금의 원금이 변제된 때, 프라이버시보호 또는 판매촉진을 위한 통지 이외에 금융기관과 해당 고객이 1년 이상 어떠한 접촉도 갖지 않은 때를 말한다.

12) 관련회사(affiliate)란 해당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해당 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 및 해당 회사와 공통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GLB법 제509조 (6)).

13) 관련하지 않는 제3자(nonaffiliated third party)란 금융기관과 모자관계나 동일지주 회사에 속하지 아니한 그룹기업 이외의 회사, 즉 금융기관의 관련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GLB법 제509조 (5)).

니면 관련회사가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¹⁴⁾

반면에 관련회사 이외의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GLB 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비자에 대해 opt-out¹⁵⁾의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라이버시통지에 관한 요건을 구비한 후에, ① 서면 등으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통지할 것, ② 소비자에게 관련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제공에 거절할 수 있는 기회(opt-out)를 충분히 보장할 것, ③ 소비자가 정보제공에 대한 거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경우에 금융기관은 비공개 개인정보를 관련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502조 (b)(1)). 다만 관련회사가 없는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엄격한 비밀준수의무계약을 체결한 이외에, ① 관련회사 이외의 금융기관과 공동마케팅을 하거나, ② 별도의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프라이버시통지만 하면 된다(동조 (b)(2)). 또 ③ 소비자에 의해 청구·승인된 거래(신용카드의 결제, 증권화 목적의 채권양도 등)를 완료하기 위해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④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¹⁶⁾ ⑤ 조직적인 리스크 관리상 필요한 경우, ⑥ 조직재편에 관련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통지도 요하지 않는다(동조 (e)).

이와 같이 GLB법에서는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유에 대하여 관련회사인지 여부를 구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통지와 opt-out 기회의 부여를 의무화

14) 岩原紳作, “金融機關ののグループ化と守秘義務”, □□金融法研究□□第19號, 2003, 14면.

15) opt-out 방식은 정보제공을 원칙적으로 고객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만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형식이고, opt-in 방식은 정보제공을 원칙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전자에 비해 후자의 방식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16) 예컨대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고객의 수익자나 수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15 U.S.C. 제6802조).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프라이버시통지와 opt-out 기회의 부여라는 방식이 채택된 배경에는 프라이버시보호의 적정수준에 대한 판단은 각 소비자나 상품·서비스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보호를 확보하고,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개인정보관리지침 및 실무를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전하게 함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각 소비자가 최적의 수준을 선택하도록 하는 고려가 근거에 깔려있다 할 것이다.

(3) GLB법의 문제점

금융관련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정보제공시 해당 고객에게 opt-out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① 금융기관이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② 고객에 의해 요구된 거래를 하기 위해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②에 있어서 정보를 관련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3자가 새로이 관련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의 정보제공금지청구는 신용정보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일정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일반 법률에 의해 인정된 정보제공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¹⁷⁾

GLB법에 의한 프라이버시보호는 금융기관이 법령준수를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있다.¹⁸⁾ 즉 GLB법은 개인 고객에 대한 사적 소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인정하지 않아,¹⁹⁾ 정보의 제3자 제공에 의해 개인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법률에 기한 직접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GLB법의 집행 및 실현은 FTC와 각 주당국에 맡겨져 있는데, FTC가 GLB법 위반으로

17) Christopher Wolf, "2005 Overview of the Gramm-Leach-Bliley Act," 828 PLI/PAT 761, 766(2005).

18) Christopher Wolf, op. cit., 767-768.

19) Borinski v. Williamson, 2004 WL 433746(N.D.Tex. March 01, 2004); Menton v. Experian Corp., 2003 WL 21692820 (S.D.N.Y. July 21, 2003).

금융기관을 제소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유지(injunction)만 할 수 있을 뿐, 이미 발생한 고객에 대한 손해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²⁰⁾ 따라서 피해자는 FCR법을 비롯한 기타 연방법에 의한 구제 또는 주법에 의한 구제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주법에 의해 구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반 금융기관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법에 위반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 해당 금융기관이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그에 기해 직접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GLB법은 고객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GLB법보다 엄격하게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주법을 제정하고 있다.²¹⁾

3. FCR법에 의한 보호

(1) 입법목적

FCR법은 우리의 신용정보기관에 해당하는 소비자보고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법이다. 즉 소비자보고기관이 정보의 기밀성, 정확성, 관련성 및 적정이용에 관해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르고, 나아가 소비자에 있어서 공평하고 평등한 방법으로 소비자신용정보 등에 대한 상업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당한 절차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법은 신용정보기관이 소비자 신용정보의 수집·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을 요하면서, 공정·정확한 정보의 축적·사용의 촉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상호 충돌할 수 있는 과제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또 소비자보고기관 외에 소비자보고기관에 정보를

20) Union Planters Bank, N.A. v. Gavel, Civ. A. 02-1224, 2003 WL 1193671(E.D. La. Mar. 11, 2003).

21) 樋口範雄, “金融・信用情報の保護と利用のあり方-アメリカの場合”, □□ジュリスト□□, No.1300(2005), 109면.

제공하는 자, 소비자보고기관으로부터 소비자보고의 제공을 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널리 규제하고 있고, 그 대상은 금융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FCR법은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정보가 건전한 금융제도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방의회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제602조 (a)). 이에 의해 FCR법이 단지 신용정보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금융제도가 적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적절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긍정하는 법률로 이해된다. 신용정보는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대전제 아래, 신용정보시스템을 소비자 신용산업 속에 당연히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FCR법의 중요한 입법적 모습이라 할 것이다.

(2) 주요내용

1) 개념정의

소비자보고(consumer report)란 개인의 신용정보를 의미한다.²²⁾ 즉 소비자보고는 개인·가족·가계전용의 여신이나 보험, 고용목적 기타 법령상 인정되는 목적으로 소비자의 적격성(eligibility)을 판단하기 위해 소비자보고기관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신용도·신용잔고·신용범위·인격·일반적 평판·개인적인 특성·생활상태에 관한 소비자(consumer)의 정보이다(제603조 (d)(1)).²³⁾ FCR법의 보호대상은 소비

22) 소비자보고기관의 신용정보에는 파산선고로부터 10년 이상이거나 소송·판결 등 기록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사항, 채권회수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사항, 체포·기소·유죄판결 등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사항, 기타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정보로 보고시점까지 7년 이상 경과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FCR법 제605조).

23) FTC는 소비자보고의 개념을 동법에 열거하고 있는 요소를 포함하여 넓게 보고 있는데, 예컨대 금융기관의 고객리스트도 신용거래목적에 관하여 소비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예정인 정보에 포함시키고 있다(Trans Union Corp., v. FTC. No.00-1141(D.C.Cir. April 13, 2001).

자보고이다.

소비자는 개인을 의미하기 때문에(제603조 (c)), 법인의 정보는 소비자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소비자보고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정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정보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고, 사전에 opt-out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관련회사에 대해서 제공하는 경우는 소비자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제603조 (d)(2)(A)(iii)). 이에 의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소비자보고기관에 부과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관련회사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보고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이란 수수료나 요금을 징수하거나, 협동조합적인 비영리원칙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소비자보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비자의 신용정보 등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평가하는 것을 통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603조 (f)). 그리고 소비자보고기관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 및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여기서 일률적으로 여신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소비자보고기관 등의 의무

소비자보고기관은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경우, 여신업자에 의한 신용공여, 회수목적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보고의 제공을 할 수 있다(제604조 (a)(1)). 즉 관할 법원의 명령 등에 따를 경우, 여신판단이나 채권회수 목적인 것이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 신용정보의 제공이 허락되고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동조 (a)(2)) 및 소비자보고기관이 소비자가 신청한 신용거래에 관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영업상의 필요성을 갖는 자라고 믿을 만한 이유²⁴⁾가 있는 경우(동조 (a)(3))에는 소비자보고를

24) Wilting v. Progressive County Mutual Insurance Co., No.00-20200(5th Cir. August 2, 2000).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 의한 신용거래에 수반하는 정보유통은 FCR법의 규제를 받는 전형적인 예이다.²⁵⁾

소비자보고기관의 대표적인 예는 개인신용정보기관(credit bureau)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비자보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기능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소비자보고기관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보고기관은 본인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나 신용정보가 여신·고용목적·보험의 인수·지급능력의 평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소비자보고기관이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제604조 (a), 제607조 (a)). 그리고 소비자보고의 정확성²⁶⁾을 확보할 의무(제607조 (b))나 본인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보고를 개시할 의무(제609조 (a))²⁷⁾ 등을 부담하게 된다.²⁸⁾ 또 민감한 정보의 일부인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진다.²⁹⁾ 이로 인하여

25) Andrews v. TRW, Ins., No.9856624v2(9th Cir. October 4, 2000).

26) Sepulvados v. CSC Credit Srevices, Ins., No.97-50423(5th Cir. October 23, 1998),

27) 소비자보고기관은 소비자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본인에 관한 파일 내의 모든 정보와 그 정보원, 정보취득자명 등을 명료·정확하게 개시하여야 한다(FCR법 제609조 (a)). 소비자의 승인이 있을 때는 소비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개시할 수 있다(FCR법 제610조 (b)). 소비자가 자기정보의 완전성·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무료로 재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주장이 근거가 없을 경우는 조사를 종료하더라도 무방하다. 재조사 결과 정보가 부정확·불완전한 것임을 알았을 때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만 한다(FCR법 제611조(a)).

28) 소비자는 소비자보고기관과 정보이용자·제공자에 대해 개시된 정보에 의하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또는 주의의무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없다. 단, 악의·고의로써 소비자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공된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FCR법 제610조 (e)).

29) 의료정보는 관련회사간에 공유하는 경우도 소비자보고로부터 제외되지 않고(FCR법 제603조 (d)(3)), 소비자보고기관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① 보험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② 고용목적의 이용이나 여신에

금융기관은 소비자보고기관에 해당하지 않도록 회피수단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³⁰⁾

소비자보고기관에 대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제623조 (a) 등).³¹⁾ 또 소비자보고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하는 자는 그 불이익한 내용 등을 해당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제615조 (a)) 등의 의무를 진다.³²⁾ 또한 FACT법에 의해 금융기관(GLB법상의 금융기관과 같다)이 고객의 사고정보(negative information)³³⁾를 전국적 규모로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소비자보고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서면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FCR법 623조 (a)(7)(A)).

대해 제공 정보가 고용이나 여신의 판단에 밀접하게 관련하고 나아가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FCR법 제604조 (g)(1)).

30) 樋口範雄, 앞의 논문, 109면 참조.

31) 누구라 하더라도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한 것을 알거나 의도적으로 정확성의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는 그 정보를 소비자보고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FCR법 제623조 (a)(1)(A)). 또한 소비자로부터 특정정보가 부정확하다는 뜻의 통지를 받고 있을 경우나 정보가 실제로 부정확할 경우에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보고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동조 (a)(1)(B)). 소비자보고기관에 대해 소비자와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누구라 하더라도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비자보고기관에 대하여 그 뜻을 신속히 통지하고, 정정한 정보를 제공하던가, 정보를 정확한 것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동조 (a)(2)). 소비자보고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자는 그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에 관한 분쟁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에 관해 조사하여야 하고, 소비자보고기관으로부터 제공된 관련 정보의 모든 것을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소비자보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b)).

32) 즉 누구라 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하여 본인의 소비자보고에 포함되는 정보를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할 때는 일정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일정사항은 해당 소비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내용, 불이익취급을 하는 자에게 소비자보고를 제공한 소비자보고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그 불이익취급은 소비자보고기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관 측에 그 구체적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소비자는 그 소비자보고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개시하고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는 점에 관한 것이다(FCR법 제615조 (a)).

33) 사고정보란 고객의 지급지체, 지급불능, 기타 채무불이행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FCR법 제623조 (a)(7)(G)(i)).

3) 정보공유의 규제

소비자보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 관련회사인가의 여부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다르다. 비관련회사에 소비자보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소비자보고기관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비자보고기관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회사에 소비자보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opt-out의 기회를 부여하면, 제공되는 정보가 소비자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보고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제한이나 본인에 대한 정보개시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로서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다만 FACT법에 의해 관련회사라 하더라도 소비자보고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마케팅 목적의 권유(affiliate marketing)에 이용할 때는 본인에게 통지하고, opt-out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624조 (a)(1)).³⁴⁾ 무엇보다 기존의 거래관계³⁵⁾에 있는 소비자에 대한 권유나 소비자로부터의 조회·송납·요구 등에 기한 권유는 적용 제외로 되는 것(제624조 (a)(4)) 등으로부터, 금융기관에 의한 두드러진 반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배상책임과 소비자보호

FCR법은 법규위반시 귀책사유외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와 신용정보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민사책임에 있어서,

34) FACT법에 의해 FRB나 FDIC 등의 금융감독당국은 FCR법 제624조의 실시와 관련한 규칙을 협력하여 제정하고(FACT법 제214조 (b)), 이에 따라 예컨대 FRB의 Regulation V에서는 소비자보고로 볼 수 있는 정보를 관련회사에 제공하려고 하는 자가 본인에게 opt-out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12 CFR Part 222.20 등). Regulation V는 공정신용보고에 관한 규정이다(<http://www.federalreserve.gov/regulations/default.htm#v>).

35) FCR법상 기존의 거래관계에는 ① 권유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18개월 이내에 권유하고자 하는 관련회사와 거래가 있었을 경우, ② 과거 3개월 이내에 그 자에 대해 조회나 신청을 했을 경우가 포함된다(제624조 (d)(1)).

누구라도 소비자에 대해 FCR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고의로(willfully)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그 소비자에게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616조 (a)). 또한 누구든지 허위 명목 또는 허용되는 이외의 목적인 것을 알면서 소비자보고를 취득했을 때는 일정 금액을 소비자보고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동조 (b)). 그리고 누구라도 소비자에 대해서 FCR법상 부과되는 의무를 과실로(negligent) 인해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그 소비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617조 (a)). 형사적으로는 고의에 의해 허위의 명목으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보고기관으로부터 취득했을 때에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619조).

4. GLB법과 FCR법의 적용 관계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에 있어서 GLB법은 비공개 개인정보(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정보 등)를 대상으로 하는데, FCR법은 소비자보고(소비자의 신용도, 신용상태, 신용능력, 성격, 일반적 평판, 개인적 특성, 생활상태에 관한 정보 등)를 대상으로 한다. 즉 GLB법은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비공개 개인정보의 관리의 측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비하여, FCR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한 소비자보고의 처리의 측면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고에 관해서는 FCR법의 규정이 우선하고, 소비자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GLB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GLB법 제506조).

규제되는 정보제공의 측면에 있어서도 GLB법은 관련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규제대상으로 하지만, FCR법은 관련회사 및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제공을 위한 조건에 있어서도 GLB법은 프라이버시보호지침의 통지 및 opt-out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FCR법은 소비자보고기관이 되어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FCR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소비자보고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 GLB법상의 opt-out의 부여는 면제되고(GLB법 제 502조 (e)(6)(A)), 소비자보고기관이 소비자보고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GLB법상의 opt-out의 부여를 요하지 않는다(GLB법 제502조 (e)(6)(B)). 또 개인의 거래실적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보고로부터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FCR법 제603조 (d)(2)(A)(i) (ii)), FCR법상 관련회사 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에 있어서 GLB법이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개인정보는 FCR법이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정보보다도 넓은 개념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이 거래실적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GLB법이 적용되므로 관련회사간의 공유는 제한되지 않지만, 관련회사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opt-out의 부여를 요한다. 그리고 FCR법에 기한 그룹내 관련회사간의 정보공유에 관하여 본인에 대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는 GLB법상의 프라이버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GLB법 제503조 (b)(4)), 실무상 각 법률에 기하여 본인에 대한 통지는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FCR법은 정보의 공유에 대해 GLB법보다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즉 GLB법은 비공개 개인정보를 비관련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FCR법의 소비자보고는 관련회사간 및 비관련 제3자와의 공유의 양자를 규정하고 있다.³⁶⁾

5. 기타 규제 현황

FTC는 2004년 11월 개인소비자신용조사기관이 개인신용정보의 도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개인신용정보 도용피해자의 권리’(The Identity Theft Rights)를 발표하였다. 개인신용정보도용피해자권리의 주

36)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and the Privacy of Your Credit Report(www.epic.org/privacy/fcra 참조).

요 내용은 1) 전국 차원의 소비자 신용조사기관에 자신에 대한 정보도용경보(fraud alerts)를 요청할 수 있다.³⁷⁾ 2) 신용조사기관이 갖고 있는 소비자의 신용정보 내용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3) 사업자나 은행 등에 대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계약서 등의 서류들은 청구할 수 있다. 4) 부채회수 전문기관(debt collector)에 대하여, 자신의 신용정보가 도용되어 생긴 부채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신용조사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도용으로 발생한 거래나 신용정보를 자신의 신용정보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FACT법에 의거 신용조사기관들이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권리를 요약한 것으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및 확대 방지를 위해 밟아야 할 절차를 요약하여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금융회사 등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FTC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³⁸⁾

FTC는 또한 2004년 11월 신용카드회사, 백화점, 전자상거래회사 등 영업과정에서 소비자의 소비자신용정보를 수집·사용하는 사업자가³⁹⁾ 소비

37) 현재 전국 차원의 소비자신용조사기관은 Equifax, Experian, TransUnion인데, 소비자에 대한 정보도용경보가 있게 되면, 해당 소비자에 대한 신규신용카드발급, 은행대출신청 등이 잠정 중지되게 된다.

38) 2004년 11월 FTC는 개인금융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금융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즉 FTC는 Nationwide Mortgage Group 및 Sunbelt Lending Services에 대해 고객의 금융정보 유출위험의 평가 및 위험감소 대책의 미수립, 종업원에 대한 고객의 금융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의 미실시, 고객금융정보의 수집·관리·이용의 기본정책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GLB법상 Privacy Rule 위반 등을 이유로 향후 유사한 범위반행위 금지 및 10년간 매 2년마다 외부의 전문가로 하여금 고객금융정보 프로그램을 평가받아 GLB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동의명령안(Proposed consent order)의 시정조치를 취하였다(FTC Enforces Gramm-Leach-Bliley Act's Safeguards Rule Against Mortgage Companies(November 16, 2004)(<http://www.ftc.gov/opa/2004/11/ns.shtm>).

39) FTC는 사업자들이 소비자신용정보를 수집·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FTC's Standards for Safeguarding Consumer Information; 16 CFR Part 314)인 안전규칙을 2002년 5월 제정·시행하고 있다(전문은 <http://www.ftc.gov/os/2002/05/67fr36585.pdf> 참조).

자신용정보를 폐기할 때 지켜야 할 ‘소비자신용정보폐기규칙’(Regulation on Consumer Information and Records Disposal: 16 CFR Part 682)을 제정·발표하여, 2005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⁴⁰⁾ 이는 2003년의 FACT법에 근거하여 영업과정에서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수집·사용·보관하는 사업자는 그 정보가 적절히 폐기되도록 함으로써, 이미 사용된 신용정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의 유출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정한 것이다. FTC는 금융감독 관련기관(FRB, FDIC, SEC 등)과 협의하여 사업자들이 소비자신용정보를 폐기함에 있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사업자들은 신용정보의 폐기과정에서 신용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도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장치(reasonable measures)⁴¹⁾를 구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권리정보센터(Privacy Rights Clearinghouse)는 2004년 3월 제정된 ‘개인신용정보방지를 위한 사업장의 책임정보처리실무’(Prevent Identity Theft with Responsible Information-Handling Practices in the Workplace)⁴²⁾를 2006년 12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책임있는 정보처리실무를 포함한 포괄적인 프라이버시지침을 채용할 것, 개인의 기밀데이터는 안전한 컴퓨터시스템에 보존한 후 암호화할 것,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세팅을 의무화할 것, 데이터를 권한있는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문서는 파쇄기에 의해 처리하고 전자파일은 삭제하며 컴퓨터드라이브·CD-ROM은 파손시켜 철저히 처리할 것, 기밀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종업원 등에 대한

40) 전문은 <http://www.ftc.gov/os/2004/11/041118disposalfrn.pdf> 참조.

41) 합리적인 장치란 신용정보가 담긴 서류의 경우 소각·분쇄·파쇄하여 다시 조립하여 알아낼 수 없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집·이행·점검하고, 신용정보가 담긴 전자매체의 경우 파괴 또는 삭제하여 재생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이행·점검하며, 제3자로 하여금 소비자신용정보를 폐기하도록 할 경우 제3자가 폐기규칙을 이행하도록 계약하고 그 이행 여부를 독립된 제3자가 감사하도록 하며 나아가 제3자가 전문단체의 공인을 받도록 할 것 등이다.

42) <http://www.privacyrights.org/ar/PreventITWorkplace.htm> 참조.

신원 조사를 할 것, 고객이나 종업원에게 기밀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computer security 위반을 통지할 것,⁴³⁾ 정기적으로 모든 정보처리실무와 프라이버시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007. 3. 29.에 공표된 제안규칙(Proposed Rules)⁴⁴⁾에 의하면 2006년 10월 제정된 규제완화법(Regulatory Relief Act) 제728조는 “정부기관들이 금융기관의 선택에 따라 GLB법 제503조에 입각하여 정보 공개조항에 사용될 수 있는 모델방식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는데, 규제완화법은 모델방식이 그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금융기관에게 세이프하버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아가 제 728조의 모델방식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한 형태와 디자인일 것, 명확하고 뚜렷한 정보공개를 제공할 것, 소비자들이 쉽게 금융기관의 공유실행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간의 프라이버시 실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 간결하며 읽기 쉬운 폰트를 사용할 것, 정부기관들은 공개평가를 위해 모델방식을 2007년 4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제안규칙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통지에는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관련회사와 비관련 제3자에게 공개할 때 금융기관의 정책과 실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통지는 소비자에게 금융기관이 법령에 의해 허가된 부분을 제외(예컨대 거래진행과 고객계좌의 관리와 같은 일상의 사업적 목적을 위한 공유나 정당하게 실행된 정부요구에 대한 회신)하고, 통상적으로는 비관련 제3자와 소비자에 대한 비공개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opt-out)

43) 30개 주 이상에서 비밀위반통지법(security breach notice laws)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ttp://www.privacyrights.org/ar/PreventITWorkplace.htm>).

44) 14944 Federal Register/Vol.72, No.60/Thursday, March 29, 2007/Proposed Rules(<http://www.fdic.gov/regulations/laws/federal/2007/07proposead16.pdf>).

지시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프라이버시통지는 FCR법이 적용 가능한 곳에서 소비자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관련회사간에 공유되고 있는 특정정보를 opt-out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1.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의 개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로 민간부문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의료보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⁴⁵⁾(이하 ‘금융실명거래법’이라 함),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⁴⁶⁾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함) 등이 있고, 공공부문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살펴본다.

45)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6) 제9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용정보보호법의 내용

(1) 신용정보보호법의 목적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및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1. 5. 신용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의 보호대상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신용정보)⁴⁷⁾를 말하고

-
- 47) 제2조 (정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공개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방송 등의 공공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등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를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4.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5.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6. 제2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법 제2조 제1호), 보호주체는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신용정보주체)이다(동조 제2호). 신용정보보호법은 사생활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2) 신용정보업의 영위 규제(제2장)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4조의2). 신용정보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이다(제4조 제2항). 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다(제4조의2). 신용정보업자가 그 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8조).

(3) 신용정보의 수집·유통 제한(제3장 및 제4장)

신용정보업자 등은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함에 있어서 동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안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또한 신용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불확실한 개인정보의 수집·조사를 금지하고 있다(제15조 제1항).⁴⁸⁾

48)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신용정보업자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4)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제5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개인신용정보⁴⁹⁾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3조 제1항).⁵⁰⁾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49)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신용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의미하고,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신용제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그 조문의 배열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같은 법령에서 그 제공 또는 사용시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도6).

50)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그러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중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본인의 동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표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4조).⁵¹⁾ 이 밖에도 신용정보주체에 대해 신용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제출된 동의서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용도나 목적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되었다면 그 제공에는 동의가 없다고 하고 있다(앞의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51)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 2의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 있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신용정보업자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제24조의2),⁵²⁾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제25조), 손해배상청구권(제28조)⁵³⁾ 등을 인정하고 있다.

(5) 기타(제6장)

신용정보업에 대한 감독(제29조 등) 등과 벌칙(제32조 등)⁵⁴⁾ 및 과태료(제35조) 규정을 두고 있다.

IV. 우리법과 미국법제의 비교 및 시사점

1. 법규정의 비교

법체제에 있어서 우리는 신용정보보호법 등 단일법을 가지고 규율하고 있으나, 미국은 총론적으로는 연방법에 의해 규제하는 방식을

52) 제24조의2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 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3) 제28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추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조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4) 대법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함을 요한다.”고 하여,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신용카드회원모집이라는 신용카드회사의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위 업무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앞의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취하면서 각론적으로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는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법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규율하고 있지만, 미국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비밀준수의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정보에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다고 보아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프라이버시보호의 관점에서 개별 분야마다 보호를 하고 있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있어서 우리의 신용정보보호법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시행령 제2조 제2항), 미국은 GLB법도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신용정보보호법, 금융분야 모범규준 등)에서는 공개·비공개를 불문하고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성질에 의한 제한이 없는데 비하여,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GLB법, FCR법)에서는 정보의 이용목적이나 성질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GLB법에서는 소비자의 비공개정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받았을 경우는 제외되고, FCR법에서는 공개정보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은 일정한 신용정보로 한정되고 있다.

또 금융관련회사의 정보공유의 허용성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밸런스를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정보공유를 보다 유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관련회사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 등을 필요로 한다) 점에 비해, 미국에서는 관련회사 유무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관련회사인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정보공유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도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해 금융지주회사 등은 신용정보보호법상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탄력적으로 정보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⁵⁵⁾

정보의 이용목적에 따라 정보공유의 요건에 있어서도 미국은 명시적인 차이를 두고 있다. 예컨대 GLB법에서는 부정방지나 조직적인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회사 이외의 자와 공유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opt-out을 요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다만 FCR법에서는 관련회사간 공유라 하더라도 마케팅 목적의 권유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opt-out의 부여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 의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용목적에 따라 정보공유의 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정보공유에 의해 소비자에게 줄 이익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를 인정하면서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55) 제48조의2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총액에 관한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총액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중에 1인 이상을 개인신용정보등을 관리할 자(이하 “신용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관리인은 개인신용정보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등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업자의 위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우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업무의 개선·중지·신용정보의 제공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에 비해, 미국의 경우 GLB법의 집행과 실현은 FTC 및 주당국에 맡겨져 있어 금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FTC가 사법상 유지청구까지 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잘못된 정보공시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해당 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⁵⁶⁾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FTC가 제소하는 경우 유지청구만 할 수 있을 뿐, 손해를 입은 고객의 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이 직접 일반 불법행위법 등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미국에서는 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적절한 균형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법규정이 검토되어 왔다. 이 점에 대해 GLB법은 재무장관이 다른 감독 당국과 공동으로 관계자(금융서비스

56)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피고와 같은 보증보험업의 경우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피고가 원고는 그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를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상 주채무자의 범위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7511). 이 밖에도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19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517 참조.

업계, 소비자단체 등)와 협의한 후, 금융기관과 관련회사의 정보공유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하고 있다(제508조). 그리고 2004년 6월 재무부보고서(Security of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가 제출되었는데, 동보고서에서는 정보공유의 목적, 정보공유의 편익과 리스크, 현행법의 평가, 현행법과 다른 접근방법의 실현 가능성, 현행의 프라이버시통지 평가의 각 사항에 대해서 금융기관측과 소비자측 쌍방의 견해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FACT법에 의해 ① 정보공유, ID도용에 대한 대응, 정보의 정확성 향상에 관한 통일적인 국내 기준을 마련할 것(FCR법의 주법에 대한 우월을 정한 규정의 영구화), ② 소비자보고의 정확성이나 목적 이외의 이용 유무의 확인을 위해 소비자는 소비자보고기관으로부터 매년 무료로 소비자보고의 교부를 받을 것, ③ 소비자는 ID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화만으로 개인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여신 이력의 부정사용을 저지할 수 있을 것, ④ 감독 당국은 ID도용이 의심될 때는 금융기관에 경보(red flag)⁵⁷⁾ 발동과 함께 금융기관이 검사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2007. 3. 29.에 공표된 연방제안규칙(Proposed Rules)은 프라이버시통지에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관련회사와 비관련 제3자에게 공개할 때 금융기관의 정책과 실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면서, 소비자에게 금융기관이 법령에 의해 허가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비관련 제3자와 소비자에 대한 비공개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opt-out) 지시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통지는 FCR법이 적용 가능한 곳에서 소비자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관련회사간에 공유되고 있는 특정 정보를 opt-out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57) FACTA, The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Consumers Win Some, Lose Some(2004. 8)(<http://www.privacyrights.org/fs/fs6a-facta.htm#2f>).

같이 금융관련회사의 정보공유에 대해서 종합금융기관화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 기초한 ID도용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한 법규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점은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방법에 비해 보다 엄격한 정보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각 주법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비관련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제3자 제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관련회사간에도 고객은 정보의 이용·제공의 수단에 대해 일정한 통지개시라는 보호와 함께,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주는 GLB법과는 달리 관련회사 내라 하더라도 opt-out rule이라는 의미에서의 동의원칙과, 관련회사 이외의 경우에는 opt-in rule이라는 의미에서의 동의원칙을 채택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신용정보보호법 제23조는 정보제공에 있어서 opt-in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실무상 금융기관들은 약관형태로 거래신청시점에 소비자로 하여금 기본거래계약과 함께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를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해 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연방차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또 금융기관이 고객의 정보를 소비자보고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 FCR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비자신용보호법 제24조의2에서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인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신용정보제공사실에 대한 통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도 그동안 소비자의 신용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부

단히 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신용정보의 두터운 보호 체계가 구축될 때 소비자는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2005. 11. 8).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금융협상
결과와 시사점□□(2007. 4. 4),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07. 6. 1).

박훤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경희법학□□, 제40권 제2호
(2005).

정성구,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상사
법연구□□, 제25권 제2호(2006).

岩原紳作, “金融機關ののグループ化と守秘義務”, □□金融法研究□□, 第19號
(2003).

樋口範雄, “金融・信用情報の保護と利用のあり方-アメリカの場合”, □□ジュ
リスト□□, No.1300(2005).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Public Opinion on Privacy (<http://www.epic.org/privacy/survey/>).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and the Privacy of Your Credit Report(www.epic.org/privacy/fcra).

FACTA, The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Consumers Win Some, Lose Some(2004. 8)(<http://www.privacyrights.org/fs/fs6a-facta.htm#2f>).

FTC, Enforces Gramm-Leach-Bliley Act's Safeguards Rule Against Mortgage Companies(November 16, 2004)(<http://www.ftc.gov/opa/2004/11/ns.shtm>).

Privacy Rights Clearinghouse, FACTA, The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Consumers Win Some, Lose Some (Dec. 2005)(<http://www.privacyrights.org/fs/fs6afacta.htm>).

Christopher Wolf, “2005 Overview of the Gramm-Leach-Bliley Act,” 828 PLI/PAT 761(2005).

Daniel J. Solove & Chris J. Hoofnagle, “A Model Regime of Privacy Protection (Version 2.0),” GWU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132(2005).

DEREK J. SOMOGY, “Information Brokers and Privacy,” A JOURNAL OF LAW AND POLICY Vol. 2:3, 901(2006).

Jason Shroff, “California: A Privacy Statute Meets the GLBA & FCR법,” 9 N.C. Banking Inst. 223(2005).

Julia C. Schiller, Informational Privacy v. The Commercial Speech Doctrine: Can the Gramm-Leach-Bliley Act Provide Adequate Privacy Protection?, 11 COMMLAW CONSPECTUS 349(2003).

KATY K. LIU,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Regulations: Disclosure, Opt-Out Rights, Medical Information Usage, and Consumer Information Disposal,” A JOURNAL OF LAW AND POLICY Vol. 2:3, 715(2006).

Kyle Thomas Sammin, “Any Port in a Storm: The Safe Harbor, The Gramm-Leach-Bliley Act, and the Problem of Privacy in Financial Services,” 36 GEO. WASH. INT’L L. REV.653(2004).

MARGARET BETZEL, “Privacy Law Developments in California,” A JOURNAL OF LAW AND POLICY Vol. 2:3, 831(2006).

Steven Robert Roach & William R. Schuerman, Jr., “Privacy Year in Review: Recent Developments in the Gramm-Leach-Bliley Act, Fair Credit Reporting Act, and Other Acts Affecting Financial Privacy,” 1 ISJLP 385(2005).

<http://www.consumer.gov/>

<http://www.fdic.gov/>

<http://www.federalreserve.gov/>

<http://www.ftc.gov/>

<http://www.privacyrights.org/>

토 론 문

「미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 토론 자료*

김 석 훈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선임조사역)

I. 금번 토론회의 의미

-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욕구가 증대함과 동시에 그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많아짐
 -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개정 작업을 진행 중(개정 신용정보법 입법 예고 : 06.6월)
- 따라서 미국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률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의 나아갈 방향을 추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됨
 - 특히,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의 알권리 및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절실한 시점

* 동 자료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감독당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II. 미국의 신용정보 관련 법률 체계

□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포괄적인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을 가지고 않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내용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 다수의 법률을 가지고 있음

□ 대표적인 법률*로는 아래와 같음

* 신용정보법 내용과 관련된 법률만 선정

① **The Gramm-Leach Bliley Act(금융서비스 현대화법)**

- 금융기관간 개인신용정보 제공 규제 및 소비자 권리 규정

②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공정신용보고법)**

- 소비자 보고서(customer reporter) 및 신용보고기관(credit reporting agency) 규제 및 소비자 권리 규정

③ **The Equal Credit Opportunity Act(공평신용기회법)**

- 금융거래시 차별금지 및 소비자 권리 규정

④ **The Fair Collection Practices Act(공정채권추심관행법)**

- 채무자추적시 유의사항, 채무자학대 및 불공정관행금지 등 채권추심 실무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아래에서는 개인신용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①~③ 법률 중 개인의 알권리 및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함

Ⅲ. 각 법률의 주요 내용(소비자 알권리 관련) 및 시사점

1. The Gramm-Leach Bliley Act

□ 규제 대상 기관 (509(3))

GLBA 내용	신용정보법 관련 내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은행, 증권, 보험, 신용조합, 모기지 회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금융기관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가 1조원 이하인 기업 등(\$3 v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이 너무 포괄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 법률 마련 필요

□ Opt-Out 기회 부여

GLBA 내용	신용정보법 관련 내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Opt-Out 기회를 부여 (프라이버시 통지) · 예외 -제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과 공동 마케팅 ((b)(2)) *감독당국이 정한 요건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동의(Opt-in) · 예외 사유 -개인 동의 -법원제출 명령 등 (§2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BA는 프라이버시 통지 예외가 되는 ‘제휴 협약’에 대해 정의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고객의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 유상제공 등의 행위가 가능할 소지

제 2주제 미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GLBA 내용	신용정보법 관련 내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동의 소비자에 의해 청구·승인된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경우 영업, 합병 등의 경우 등(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에서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면제 필요

□ 프라이버시 통지*(503조)

* 비공개 개인정보에 대한 내부 지침(Policy)과 실무를 기재한 통지

GLBA 내용	신용정보법 관련 내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 시기 및 주기 -고객관계 개시시 또는 매년 1회 이상 · 포함되어야 할 정보 -제공되는 정보의 범주 -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범주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비밀 및 보안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관리정보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개인 권리 등을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공시(§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모범규준(06년 4월 시행)에서 사전동의서에 유사 내용 반영토록 함 -제공대상, 제공기관 구체화 ·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현행 사전동의제도는 다소 미흡하므로 이와 유사한 ‘프라이버시 통지 제도’ 마련 필요 -단, 통지 방법은 다양화

GLBA 내용	신용정보법 관련 내용	시사점
---------	-------------	-----

2.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609조)

FCRA 내용	신용정보법 관련 내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 소비자 관련 모든 정보 - 정보의 출처 - 소비자 보고서를 제공받을 자의 사항 - 지난 1년동안의 조회 기록 - 신용평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신용평점, 최근 신용평점 :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등 - 소비자 권리 요약서* * 감독당국에 모범 모델 제정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법에서는 소비자 보고서와 관련된 규정이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고서 내용도 구체화할 필요 · 특히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공개 및 · 소비자 권리 요약서를 함께 제공토록 할 필요

□ 불리한 조치에 따른 통지(615조)

FCRA 내용	신용정보법 관련 내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보고서에 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법에서는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알권리 보

FCRA 내용	신용정보법 관련 내용	시사점
거하여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소비자에 통지 -당해 보고서를 제공한 CRA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제공	비자 보고서와 관련된 규정이 거의 없음	호를 위해 -불리한 조치에 따른 통지 의무 마련 필요 • 신용정보법 개정안(\$24의2)에 유사한 내용 반영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을 미국 사례를 고려하여 마련 필요

3. The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 차별조치 금지(701조(a))

ECOA내용	신용정보법 관련 내용	시사점
• 금융기관은 신용 거래 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생국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 신용정보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 금융 거래시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 -금융기관의 규제비용은 증가하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에

		진일보한 면은 있음
<input type="checkbox"/> 불리한 조치에 따른 통지(701조(d))		
ECOAN내용	신용정보법 관련 내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은 신청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서면으로 그 사유 진술 :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함 -불리한 조치의 정의 : 신용공여의 거절, 취소, 조건의 변경, 요청 신용공여액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불리한 조치에 따른 통지 의무 마련 필요 · 신용정보법 개정안(\$24의2)에 유사한 내용 반영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을 미국 사례를 고려하여 마련 필요

IV.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하여

-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미국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률은 신용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여러 조치를 두고 있음과 동시에
 - 개인의 알권리 및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많은 규정을 마련

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음

- 현재 조회기록로 인한 금융거래 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이 사회 이슈화 되고 있으나
 -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알권리 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 금융거래 현실에서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도 개인의 알권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 조회동의 신설(안 §23②),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24의2)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개인의 알권리 등을 보호를 위해 미국 법률 및 규제당국의 노력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됨

토 론 문

미국의 개인신용정보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 토론자료 -

심 영
(중앙대학교 교수)

1. 미국에서 금융정보 규제의 발전과정

(1) 1970년대 초

- ▷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한 정보의 집중(centralized database)
 - 정보의 집중과정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가 수집되어 이로 인해 고객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
 - Fair Credit Reporting Act of 1970 : 특히 개인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 수집된 정보의 비밀보장
 - *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이 가능하게 하여 수집정보의 정확성 확보
 - * 오래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의 제거를 위한 절차
 - 연방정부기관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기관의 database에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통제(Big Brother)를 걱정함.

- Privacy Act of 1974 : 개인의 동의 없이는 연방정부기관이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함.

(2) GLBA 입법과정

- ▷ 1999년 초까지는 GLBA에 금융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둘 것을 생각하지 않았음.
- ▷ 1999년 5월 4일 클린턴 대통령이 금융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연설을 하였고, 6월 9일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이 마케팅회사에 고객의 정보를 판매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발생 하게한 은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함. 이 사건을 계기로 하원 위원회(House Commerce Committee)에서 금융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민주당 의원들은 opt-in 방식을 원하였고, 공화당의원들은 보다 완화된 규제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음. 따라서 GLBA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한 결과임.

(3)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 ▷ Fair Credit Reporting Act는 개인정보의 도용을 통해 신분도용(identity theft)에 대한 명시적 보호규정이 없었음.
- ▷ FCRA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신용정보기관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신분도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2. 미국에서 금융정보에 대한 규제 의 원칙

▷ 미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정정보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을 가지고 있음.

- Gramm-Leach-Bliley Act도 공정정보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정보관련 규제를 함.

▷ 공정정보원칙에 따른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음.

- 통지(Notice)
- 선택/동의(Choice/Consent)
- 접근(Access)
- 보안(Security)
- 집행과 구제(Enforcement and Remedies)

3. GLBA상 금융정보규제원칙

(1) 통지(Notice)

▷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지 여부와 어느 범위에서 공개할지를 결정할 수 없음.

- GLBA에서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의 경우 통지 없이는 다른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통지는 당해기관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고객관계가 성립된 때와 그 후에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통지를 하도록 함.

(2) 선택/동의(Choice/Consent)

- ▷ 선택은 개인정보의 2차적 이용에 관한 것임.
- ▷ 선택에 대한 기본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됨.
 - 산업계에서는 정보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opt-out)는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것을 원함.
 -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정보의 공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 GLBA에서는 관련회사(affiliate)와 비관련회사(nonaffiliate)의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함.
 - 관련회사와의 정보공유는 통지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공유할 수 있음. 고객은 정보공유를 거부하는 선택(opt-out)을 할 수 없음.
 - 비관련회사와의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고객은 정보공유를 거부할 수 있음.
- ▷ Joint Marketing에 대한 예외

(3) 접근(Access)

- ▷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함.
- GLBA에서는 고객의 접근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신의 당좌예금계좌, 신용카드기록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부정확한 기록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음.

(4) 보안(Security)

- ▷ 개인정보는 유실(loss)이나 승인없이 정보에 대한 접근, 정보의 사용, 공개, 파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
- GLBA에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일반적 의무로 보안을 언급함.

(5) 집행과 구제(Enforcement and Remedies)

-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규제기관이 집행에 관한 적절한 권한이 있어야 함.

제 3주제

신용정보 관련 입법현황과 문제점

발 표 자 : 박재훈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관)

토 론 자 : 김경신 (국회 재정법제실 법제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발 표 문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과제*

박 재 훈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관)

I. 신용정보법 개정배경 및 기본방향

가. 개정배경

- 신용정보인프라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요소
 - 정부는 그동안 신용불량자 문제 재발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신용정보인프라 개선을 적극 추진*
 - * 개인신용정보 전문회사(KCB) 설립 허가(05.3월), 중소기업신용정보 전문회사(KED) 설립 허가(05.7월) 등
- 그러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충분히 집중되지 못하여 신용정보인프라 개선에 애로
 -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는 일천한 역사*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부족
 - * 신용정보산업 역사: 미국 120년, 독일 80년, 영국 45년, 한국 10년 등

* 동 자료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감독당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 신용정보회사가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등도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부족
 - ※ 금융기관 등 정보보유 기관은 고객이탈 우려 등을 이유로 신용정보공유에 소극적인 경향
- 획일적인 규제체계도 타겟 마케팅, 소매금융 확대 등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에 대한 수요를 원활히 충족시키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신용정보를 확충하고 신용정보의 유통·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 인프라의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

나. 개정방향

- 신용정보인프라 개선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고 신용도에 근거한 선진화된 금융거래관행 정착 유도
 - 부정적 정보(예: 연체기록, 대부업체 이용사실) 위주로 구축된 신용정보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신용정보*를 확충
 - * 채무상환의지, 상환능력 등 차주의 신용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정보
 - 신용정보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신용정보 이용 촉진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장치 마련 및 감독규정 정비



II.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촉진

① 다양한 공공정보의 집중·활용 확대

-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공공정보는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정보(1년 이상, 500만원 이상) 등 부정적인 정보로 국한되어 있음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신용도를 하향 조정하거나 부적격자를 금융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는 측면으로만 활용되는 한계
- ⇒ 금융소비자의 채무상환의지, 기업활동의 성장성·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근거 마련

- 고객(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거래를 신청하고 자신의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공공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CB 등에 제공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집중·활용대상 공공정보(구체적인 공공정보의 종류, 제공기관은 시행령에 위임)

- (개인) 사망자 정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등
- (기업) 고용·산재보험 납부실적, 사업장정보,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실적 등

② 자사고객에 대한 자사상품 소개 목적으로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허용

- 현행 신용정보법은 고객의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목적으로만 개인신용정보 이용이 가능토록 규정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고객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여 소비자 편익을 저해

⇒ 금융기관이 자사고객에게 자사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

③ 채권추심회사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의 확대

- 채권추심업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상거래 채권만을 위탁받아 추심할 수 있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닌 대기업·비영리법인 등의 상거래 채권은 추심 불가
- 신용정보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공제조합 등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열거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 상거래채권의 채권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지 여부에 따라 규제를 달리할 이유가 크지 않으므로 모든 상거래 채권으로 추심대상 채권을 확대

④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객의 변경된 주소정보 이용

□ 행정자치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로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의 권익보호나 금융거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에 통지가 필요한 사안이 잘못된 주소지로 송부되는 사례가 빈번

* 휴면예금 처리, 연금개시, 보험계약 실효·해지 사유 발생 등

⇒ 은행, 보험회사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이익에 필수적인 사안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행자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⑤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요건 완화

□ 현재 금융기관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예외없이 본인의 사전동의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음

⇒ ‘영업양도, 회사의 분할·합병시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전’하거나 ‘신용정보의 전산처리를 위탁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 면제

○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제공시 고객의 동의방법이 서면·공인인 증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휴대폰, ARS 녹취 등으로까지 허용

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강화

①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철회권 및 Do-Not-Call 제도 도입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시 고객의 동의 규정은 있으나 정보 제공을 철회·변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이 자기정보 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하며, 특히 금번 개정내용 시행에 따라 자사고객에 대한 자사상품 소개를 허용하는 경우 이를 원하지 않는 고객의 불만이 증대할 우려
- ⇒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

②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규제 신설

- 금융기관 등이 CB(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어 고객이 알지 못한채 비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CB 조회기록이 신용등급에 반영됨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
- ⇒ 금융기관 등(대부업체 포함)이 CB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고 CB에 금융기관 등이 고객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③ 금융거래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제공 의무 부과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등을 거절·중지당하는 경우 판단의 근거를 제공받을 명확한 규정이 부재

⇒ 금융기관이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요청시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CB로 하여금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고지대상 : 연체정보 등을 제공한 CB의 명칭, 연락처 등

④ 기 타

- 신용정보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게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운용하도록 의무화
 -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 제·개정, 신용정보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고객 피해구제 및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등의 임무 수행
- 신용정보주체가 CB를 통하여 정기적으로(예: 연간 1회, 1주일간) 본인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

다.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① 신용정보업(신용조사·신용조회·채권추심·신용평가) 일부 양수 도시 금감위 인가 취득 의무화

-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가 인가받은 사업 전부를 양수 도하는 경우에만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규율

- ⇒ 사업 양수인이 별도의 인가 없이 신용정보업 신규 허가를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업 일부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금감위 인가를 받도록 강화

② 감독규정 정비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 금감위(원)은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검사·조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나 명확한 범위와 기준이 미비하여 감독당국의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
- ⇒ 감독당국이 행사하는 권한의 요건 및 내용(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용정보회사 임직원에 대한 다양한 제재수단 마련

③ 지배주주 변경 승인제도 도입

- 신용정보업 허가시에는 출자금 및 주요출자자 요건*, 기업집단 및 금융회사의 일정 비율(10%) 이상 출자제한(신용평가업) 등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 허가 이후 최대주주 변경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자칫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으로 신용정보회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
- *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니어야 하며, 주요출자자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 설립허가 이후의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선

④ 신용정보회사 출자자 요건 합리화

- 신용조사·조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 받을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으로 제한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금융기관 이외에 ‘외국에서’ 신용조사·조회,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는 자만 포함
 - 이에 따라 외국 신용정보회사에 비해 국내 신용정보회사는 자회사 형태의 신용정보회사 설립이 제한되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신용조회·채권추심·신용평가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사업부문 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사를 제한
- ⇒ 신용정보회사가 자회사로 신용조사·조회, 채권추심업 사업부문을 분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선

Ⅲ. 평가 및 향후과제

가. 평 가

- ① 신용정보 유통 활성화 및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 금융기관이 다양한 공공정보 등을 종전보다 수월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제한적으로나마 자사고객에 대한 마케팅 목적으로의 개인신용정보 활용이 가능해 짐으로써 신용정보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금융이용자는 자신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

②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권리 의식 제고

- 신용정보 무료열람권, 동의철회권 등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이는 나아가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활용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③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 확립

-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수단과 내용 및 조치요건 등 감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규정
- 신용정보 유통 확대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의 우려를 불식하고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를 견고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나. 향후과제

① 금융회사 및 CB의 신용정보 확충 노력 지속

- 현재 은행연합회나 CB를 통해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공유·활용되고 있으나, 신용정보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대

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 정보의 공유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 자체의 노력이 절실

- 또한 특정시점에서의 대출 및 연체정보 뿐만 아니라 대출실행·상환기록, 신용한도 설정기록, 신용카드·어음결제기록 등 동태적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여 신용도 평가시 금융주체의 채무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필요

② 다양한 공공정보의 공유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차질없이 진행

-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공유대상 정보와 공유범위 등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 신용도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이후 관계기관간 원활한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임

③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

-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신용정보법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분까지 규율하는 문제점 내포
- 금번 개정안에서 개인식별정보는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으나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반법이 마련될 필요

토 론 문

신용정보 관련 입법현황과 문제점 - 토론문 -

김 경 신
(국회 재정법제실 법제관)

우리나라의 IMF 이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와 2003년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를 거치면서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커졌고, 금융회사간 영업 경쟁과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신용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가능성으로부터 정보 주체를 보호할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신용관련법제는 효율적인 신용정보의 수집 및 집중을 통해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신용정보데이터가 확보 되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관리·활용 및 이용에 있어서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지난 2005년 11월에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신용보호관련 모범 기준의 내용 일부를 법제화 하는데 그치고 있고, 기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도가 부족했다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예컨대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인 동의 철회권이나 Do-Not-Call 제도, 개인 신용정보의 연간 1회 이상 무료이용,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제도 등은 이미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들이다. 물론 법규성이 없는 규준의 내용을 법률화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진일보한 점은 있으나, 금감원 규준이 법규성은 없다 할지라도 신용정보업자들에게 미치는 규제력은 큰 것이어서 대부분의 규준내용은 준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금번 개정안과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추가적 논점은 주로 외국의 신용정보관련 입법사례¹⁾를 예로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보집중의 효율성 확보

법 제23조에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집중되는

1) 본 토론문에서 제시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신용정보법 내용은 (사)일본 크레디트산업협회 크레디트연구소가 작성한 내부 자료를 참고하였다.

<위 내부 자료의 참고자료>

- 堀部政男, 相川忠夫, 渡辺達徳 他 『特集 アメリカ□□公正信用報告法□□の全容』(クレジット研究所発行『クレジット研究』제20호/1998년)
- 堀部政男, 相川忠夫, 渡辺達徳 他 『特集 イギリス의1984年データ保護法の概要』(『クレジット研究』제6호/1991년)
- 柴崎曉 『フランス共和國 情報處理技術, 情報ファイルおよび諸自由に関する1978年1月6日の法律78-17号(1)』(『クレジット研究』제27호/2002년3월호)
- 柴崎曉 『フランス共和國 情報處理技術, 情報ファイルおよび諸自由に関する1978年1月6日の法律78-17号(2)』(『クレジット研究』제29호/2003년3월호)
- 申九賢 『韓國의信用情報の利用及び保護に関する法律』(『クレジット研究』제15호/1996년)
- 『米國における金融プライバシーを巡る最近の動向』(みずほりポート 2003년 12월)
- 藤原靜雄 『改正連邦データ法 (2001年5月23日施行)』(季刊行政管理研究 No.99/2002년 9월)
- Federal Trade Commission, Fair Credit Reporting Act
- Home Office, The Data Protection Act
-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German Federal Data Protection Act
- 기타 관계자료 등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신용위주의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신용정보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²⁾. 이는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금융이용자에게 신용도에 따른 공정한 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금융기관은 부실의 위험을 줄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못지않게 신용평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의 집중의 효율성 또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제도를 면제하고 그 외의 신용정보업자나 일반적인 제3자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행과 같이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해 고객에게 사후통지를 의무화 한다면 정보주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집중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24조의2는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신용정보업자등의 통보 의무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예컨대 연간 1회 정도). 프랑스의 「데이터처리·데이터 파일 및 개인의 자유에 관한 법률」(1995, 2004년 개정)에서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제공목적으로 축적된 개인 데이터에 관해서는 데이터 주체에 대하여 최초로 제공이 행해진 사실 및 제공된 데이터의 종류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 사망자 정보의 집중

정보의 종류와 관련하여 사망자정보의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 정보 중 사망자정보는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2) 『금융』 2007. 「한국신용정보관리제도의 현안과 과제」, 홍 길, 금융감독원

불구하고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자의 주민번호 도용으로 인한 사기 발생 가능성 및 신용평가모형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신용정보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미국의 경우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등록된 사망자정보(사회보장번호, 성명, 출생일, 사망시 거주지)를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s)에서 사망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정부, 사기업, CB 등에 제공하고 있다³⁾.

3. 정보의 그룹 내 공동이용

현재 공동출자관계 또는 모자회사 관계 등 그룹 내 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용정보법상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등은 신용정보법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자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는 본인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자신의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자신의 영업에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물론 그룹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보의 공유는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최소한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사실을 알리고 해당 정보주체와 직접적인 거래로 인해 지득한 정보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보주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공동출자관계 또는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이에서의 정보의 제공은 가능하나, 다만 소비자와

3) 한국신용평가정보 국회보고자료(2007.7.18)

의 거래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이 행해지는 뜻을 명료하고도 현저하게 알리고, 제공 개시 전에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공정신용보고법(FCRA, 1997. 2003년 개정), 603조(e)>.

4. 위탁자의 감독

법제16조는 신용정보업자 등의 신용정보수집·조사·처리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집·조사와 관련된 위탁의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처리의 위탁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탁자의 자격요건을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자에 한해 제공정보 범위 등에 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을 뿐 정보 유출 등에 관한 안전조치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한 조치나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감독 또는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은 미비하다. 영국에서는 데이터관리자가 개인데이터의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security조치에 관하여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업자를 선택하고, 위탁처의 security조치의 준수를 보증하는 합리적 조치를 마련하며, 위탁처와의 계약에서 데이터보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책임을 데이터관리자 즉 위탁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데이터보호법(1998) 부칙1 파트2 제11조·제12조>. 또한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각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데이터의 처리·이용이 다른 기관에 위탁(기술적·조직적 조치를 포함하고 서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되는 경우, 본법 등의 규정의 준수에 관해 책임을 위탁자에게 부여하고 있고<제11조(1)>, 수탁자에게는, 본법의 일부의 규정이 적용된다(서비스사업으로서 데이터의

수집·처리·이용을 행하는 민간기업에 관해서는, 데이터보호담당자의 임명·직무에 관련되는 규정, 및, 데이터보호규정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한 행동준칙에 관련되는 규정이 적용<제11조(3)(4)>.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안전조치 및 비밀보장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는 자로 하도록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기초해서만 정보 처리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데이터처리·데이터 파일 및 개인의 자유에 관한 법률(1978년, 2003년 개정) 2002년 1월 30일 하원채택필 정부제출법안제35조>

5. 신용정보의 열람 범위

신용정보법 제25조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정보의 제공 및 열람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 및 열람과 관련하여 열람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공되는 정보 및 열람의 범위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열람의 범위를 해당 데이터 출처, 데이터 처리 과정·범주·목적·처리결과, 제이더 양도 수령자 또는 그 범주 등으로 매우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영국 데이터보호법 제7조(1),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4조(1), 프랑스 데이터처리·데이터파일 및 개인의자유에 관한 법률 중 2002년 1월 30일 하원채택 정부제출개정 법안 제39조>.

6. 신용정보 정정 청구권의 실효성 보장

정보의 정정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25조는 본인이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면 이에 대해 신용정보업자등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중단, 삭제 또는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고, 신용정보업자등의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금감원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의 정확성은 본인의 신용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는 금융활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성의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신용정보주체에게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처음부터 (당사자인 신용정보업자 아닌) 제3의 책임 있는 기관에 맡김으로서 정보의 정확성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확한 정보로부터 신용정보주체를 신속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부정확한 개인데이터 정정 명령은 데이터 주체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행하고<데이터보호법 제14조(1)>, 독일의 경우에도 개인 정보의 부정확성이 문제되어 그것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제3의) 책임 있는 기관이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정보이용을 봉쇄 하거나 소거하도록 하고 있다<연방데이터보호법(1977년, 2001년 개정) 제35조(2), 제35조(4)>. 또한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기록된 정보에 대해 정보의 정정요구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주체가 적극적으로 보완·갱신·사용중지·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정 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토 론 문

『신용정보 관련 입법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토론문한 정 미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발제문은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적인 부분과 향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적인 부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용정보인프라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용도에 근거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신용정보기관의 책임을 강화함을 바탕으로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발제문의 내용 중 ‘자사고객에 대한 자사상품 마케팅 목적으로의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요건 완화’, ‘신용정보인프라의 확충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토론해 해보고자 한다.

I. 자사고객에 대한 자사상품 광고의 허용에
대하여

현재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 등이 자사고객에게 자사의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편 및 기타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은 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직

접 연락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 하는 것(개정안 제24조 제1항 1호)을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¹⁾

이는 기존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이용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신용정보로 분류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의 종류를 보면 금융기관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도 많이 있으며(아래 표 참조), 자사고객과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설립,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추세와 함께 신용정보를 오용·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더욱 많아 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발제문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우려하여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철회권 및 Do-Not-Call제도”의 도입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의 종류>

종 류	내 용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성별, 국적, 직업 • 기업 및 법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과 관련한 거래의 종류 •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

1) ‘자사고객’,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종 류	내 용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 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 법원의 금지·판정·한정·처분·실종·선고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 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관련 결정에 관한 정보 •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관련 정보 • 벌금·과태료 및 공공요금 등의 체납관련 정보 • 개인의 주민등록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 등에 관한 정보 및 법인등록관련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분변동 등에 관한 정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료 : 정재욱 외, “신용정보업의 현안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6.

우리나라도 최근 개인정보유출 및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기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경우도 신용정보보호에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를 이용한 자사상품 광고의 허용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소개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개정의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이와 유사한 입법형태를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이라 함)」(정보통신부 소관)의 경우를 보면, 사전 수신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망법 제50조 제1항) 사전거래관계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서(망법 제50조 제2항)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사전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광고전송행위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사례가 증가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게 되었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보고 있으며,²⁾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에서의 다양한 피해사례는 신용정보를 이용한 광고허용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또한, 신용정보법의 입법목적인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에도 반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를 제공한 정보주체의 본래의 제공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사상품 마케팅에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24조 제1항 1호와 같이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

2) 손해배상이 아닌 행정질서를 위반한 불법 광고전송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직접전송자인 대행업체가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며, 다만 고객의 동의방법의 확대(휴대폰, ARS, 녹취 등)를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II.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요건 완화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자원은 자금이라는 기존의 개념은 현대사회로 진행되면서 자금 외에 정보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간 업무제휴의 증가 등 영업방식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신용정보법상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의하여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고객의 개별적 사전동의 면제(개정안 제23조 제4항 3호) 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³⁾

금융기관의 경우는 아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방법의 경우에도 2007년 1월 26일 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별적인 동의가 아닌 이용자에 대한 통지로 족한 것으로 규정하였고(망법 제26조 제1항), 다만, 영업양수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초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망법 제26조 제3항).

또한 금융기관의 합병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상법』의 채권자의 이의신청(상법 제

3) 박환일, “신용정보 침해에 대한 바람직한 구제방법”, 계간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2006. 6, 45쪽.

232조), 채권자보호절차 규정(상법 제527조의 5)과 금융산업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로⁴⁾ 합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기관
합병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⁵⁾ 즉, 상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알고
있는 채권자 전원에게 개별적인 최고를 해야 한다면 이를 위한 노력
과 시간, 비용이 소모될 것이며, 합병 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도 있고, 금융기관은 상시 당국의 감시 하에 있고, 합병은 당국의
인가사항이며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는 점⁶⁾ 등을 간소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서도 망법이나 금융기관의 합병시 채권자에 대한 최
고절차와 같이 간소화 될 필요성에는 동감하며, 다만 신용정보의 중
요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개정안 제23조 제7항)규정과 함께 망법의 경우와 같이 영업양수자 등
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초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이용하거나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Ⅲ. 신용정보인프라의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신용정보업계의 특징을 보면 채권추심업무가 업계 전체
매출액의 78.6%(2005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 채권의 처리를 목적으로 채권추심 전문회사의

4)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하
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최근 합병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의무 완화 즉, 일본 신회사
법 제799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정관에서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시에는 개
별 최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선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한국상장회사협
의회, “금융산업 규제개선 건의”, 상장, 2007. 6, 43쪽.

6) 정찬형·도제문, 『은행법』, 박영사, 2005, 178쪽.

설립이 대폭 증가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신용평가 시장에는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사가 영업 중이고, 이 중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고, 나머지 3개사는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진형 금융인프라산업을 주장하고 있는 신용정보업계의 업무비중의 변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신용정보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신용평가부터 채권회수까지 종합신용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S&P, Moody's, Fitch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2006년 9월 29일 ‘신용평가기관개혁법(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of 2006)’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신용평가기관의 책임, 투명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개정하여 신용평가기관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인신용평가기관(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s Organizations : NRSROs)”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즉, 인지도 있는 신용평가기관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신용평가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SEC가 해당 신용평가기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신용평가 산업의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⁷⁾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대응방향을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강화뿐만 아니라 공인신용평가기관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7) “AFP Applauds Signing of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Association for Financial Professionals. http://www.afponline.org/pub/res/news/ns_20060929_cra.html